

전원위원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2013년도 업무계획

2012. 12.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목 차〉

I. 총론	1
1. 2012년 업무총평	1
2. 대내외 환경 및 여건	3
II. 2013년도 업무계획의 기본방향 및 주요추진업무 ...	8
<2013년 업무계획 총괄도>	12
III. 2013년도 세부목표별 업무계획	13
1.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 강화	13
2.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22
3.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	28
4.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38
5. 차별시정 강화	48
<특별사업>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57
<기획사업>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	59
<기획사업> 정보인권 증진	61
<일반사업> 국가인권위원회 역량강화	63
<부록> 추진목표별 실적 및 평가	71

I. 총론

1. 2012년 업무 총평

- 2012년은 인권위 설립 이후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해이면서, 인권위 중기계획인 제3기 인권증진 3개년 계획(2012년~2014년)이 시작되는 첫 해로서 이에 따라 업무계획을 수립·시행함.
- 우리나라 인권의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제2기 인권NAP계획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권고하였고, 정보인권, 기업과인권, 장애인자립생활 분야 등에 대한 인권상황종합보고서와, 장애인인권증진 중장기 계획(2013~2017)을 마련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 기준을 제시함.
- 인권의 국제화 추세에서 UN인권이사회의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심의에 적극 참여하였고, 정보통신기술과 인권을 주제로 한 ASEM 인권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43개국 24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국제인권조약기구, ICC, APF 등 각종 국제인권회의에 적극 참가하여 국제사회에서 다자간 협력을 위해 노력함. 다만, 국제인권조약 업무가 각 과로 분산되어 있어서 이를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우리 사회의 인권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 군, 학교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운영하여 각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권고함.
- 자유권의 보장강화를 위하여 교실내 CCTV 설치여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표명, 사이버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 북한인권침해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을 운영하고, 전문가 간담회, 토론

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국가기관 최초로 북한인권침해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북한인권 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국내외 공론화에 기여하였음.

- 정책자문위원회, 정책관계자협의회, 각종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활동을 자문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운영이 요구됨. 정보인권보고서의 마련을 목적으로 한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회의 운영이 종결되면서 정보인권 포럼이 구성됨.
- 국내 인권유관기관 및 인권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각종 사업관련 토론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다만, 일부 언론의 비판적 보도와 인권단체의 협력거부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권단체와의 협력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 대한 의견표명, 사이버 인권교육, 전문분야별 인권교육의 실시 등 많은 성과가 있었음. 다만, 교육프로그램이 단기간(1박2일 이내)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1주일이상의 심화과정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향후 인권교육원 설립 대비가 필요함.
-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인권상황 실태조사(연구용역)는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와 진정사건 조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국내 연구가 미진했던 분야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용역계약의 재공고, 재심사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늦어짐에 따라 연구결과가 연말에 집중되어 결과활용이 다음연도까지 이월되거나 활용되는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2012년 : 21개 과제 수행)
- 구체적 세부목표별 추진실적 및 평가는 부록 참조.

2. 대내·외 환경 및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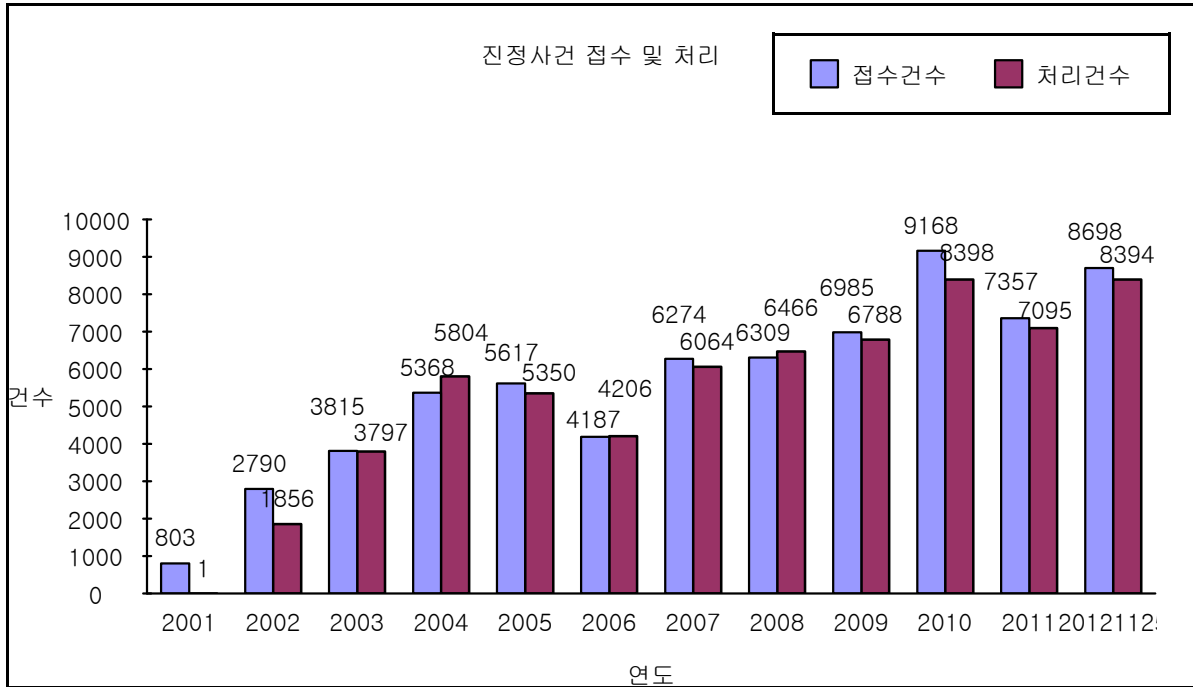
가. 대내적 여건

- 2013년은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해로서, 한정된 조직과 인력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제고하여야 하며, 또한 유엔의 파리원칙 채택 20주년, 세계인권선언 65주년으로 차기정부에서 인권이 주요정책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2012. 3. 21.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으로 조사대상이 확대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됨. 이에 따라 사립학교 및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게 되었고, 현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거쳐 2기 위원장으로 임명됨.

<주요 개정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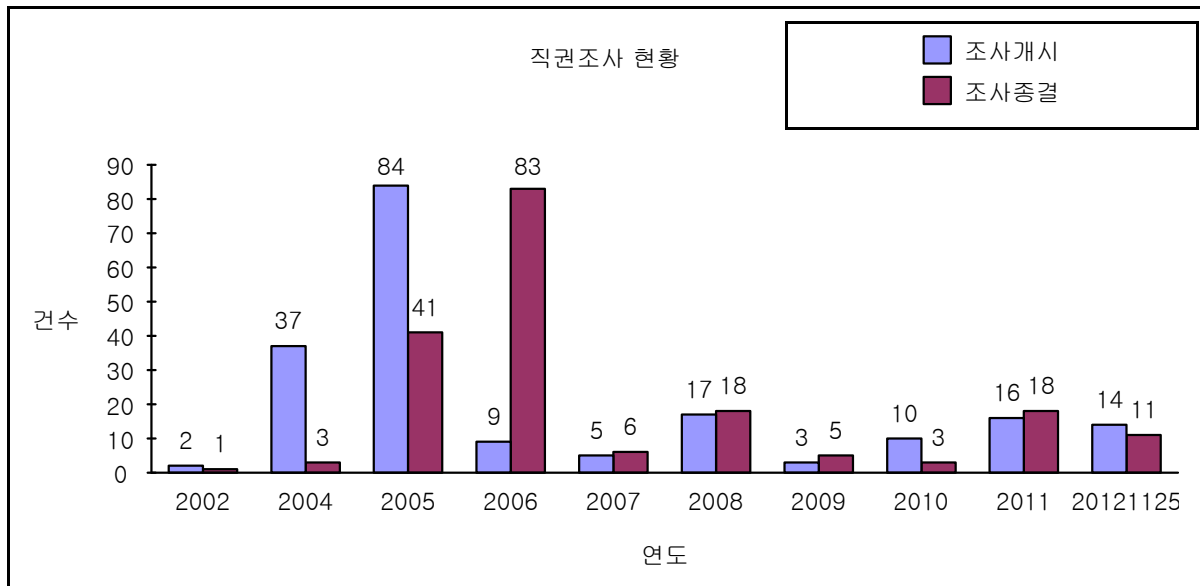
- 국가인권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 조사대상 확대 :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종 학교, 공직자윤리법의 대상인 공직유관단체 등이 추가됨
- ※ 조사대상 추가 범위 : 사립학교 6,000여개, 공직유관단체 700여개
- 권고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에 이행계획 통지

- 진정조사 및 직권조사 추이
 - 진정사건이 전반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진정사건의 처리도 증가하고 있음. 앞으로도 조사대상의 확대로 진정사건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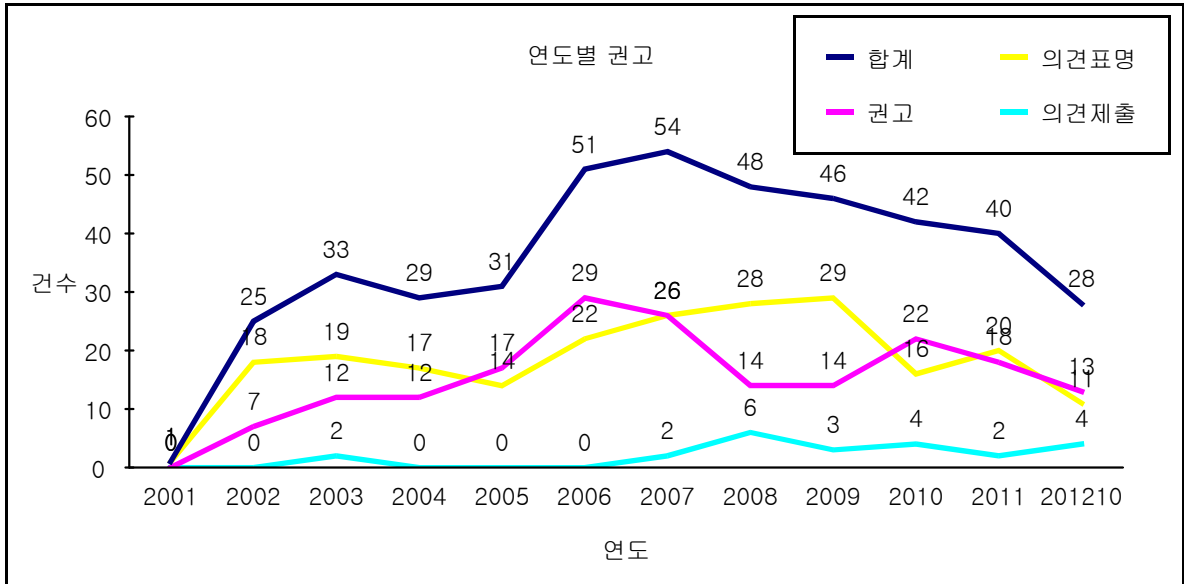
* 2010년도 접수건수 증가이유 : 장애차별 집단진정 발생

○ 직권조사는 인권현안에 대한 대응을 위한 유용한 수단임.



※ 2003년 0건, 2005년도 조사개시 및 2006년도 종결은 나이차별사건에 대한 집단 직권조사임

□ 정책권고는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을 위해 의견 표명, 권고, 의견제출(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의 방법에 의함.



※ 2012년의 정책권고는 40건 정도 예상됨

□ 인권교육 수요의 증대

○ 최근 학교폭력 및 성적비관으로 인한 자살과 학교부적응 학생 증가,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 등 인권침해 및 노인과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전한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이를 위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인권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인권교육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법률	시행일	비고
아동복지법	2012.8. 5.	인권교육의 필요성 명시
사회복지사업법	2012.8. 5.	인권교육 명시
청소년기본법	2012.8. 2.	인권교육의 필요성 명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2. 6. 8.	인권교육 의무화
정신보건법(개정)	2010. 3. 19.	인권교육 의무화

○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문제, 스포츠 분야의 인권상황 개선, 정보

인권 분야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인권의제가 제시되고 이 분야 관계자에 대한 인권의식 고양도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대내적으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비해 제도적·법적 기반이 미약하며 인권교육의 중장기적·체계적 실시를 위한 종합적 근거 틀도 마련될 필요가 있음.

나. 대외적 환경

- 17대 또는 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인권교육법, 북한인권법, 차별금지법 등 각종 인권 법률이 자동 폐기되었고, 19대 국회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국제인권사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 역할 증대를 기대함.

- 우리나라는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설립 이래 세 차례 이사국(2013~2015년)에 선출되고,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는 1996년 이후 두 번째로 선출(2013~2014)됨에 따라 내년도부터 국제사회의 주요 인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세계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협력에도 동참하여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게 됨.

- 2012. 우리 위원회가 ICC 고령화실무그룹 및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아태 지역 대표로 선출되는 등 국제적으로 노인인권 보장 및 인권경영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증대

- 2012. 10월 유엔인권이사회 UPR 실무그룹 및 2011. 9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우리 위원회 내부에 아동인권 소위원회 설립에 대한 권고사항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위원회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조직역량강화 등 UPR 및 국제인권조약감시기구의 권고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국격과 국제인권사회의 위상에 맞는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 미가입 국제인권조약의 가입(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강제실종협약) 등 국제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요청됨.

□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 확산 기반 마련

- 2011. 4.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한 바, 광역자치단체 9곳, 기초자치단체 9곳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서울시 관악구 등에서 조례제정 절차를 진행 중임. 또한 특정대상과 관련한 개별 인권조례 제정 흐름도 지속되고 있음(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등).
- 지역주민들의 인권보호 제도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강화 필요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인권헌장 및 인권지표 선포(2012. 5. 22.) ○ 서울시 인권위원회 발족(2012. 11.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인권위원회 : 3년 임기, 15명 ○ 기타 : 학생인권옹호관제 도입(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
|---|

□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국제적 기준 제시.

- 유엔은 2011년 12월 UN 인권교육훈련선언을 채택하여 국가의 인권교육 실행 책임성과 국가수준의 조치사항 등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적 준거틀을 제시하였고, 또한 유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 2014)을 통해 고등교육 체계, 경찰, 검찰·교정 등 법집행관, 군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각 국가는 인권교육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2015년까지 인권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함.

II. 2013년도 업무계획의 기본방향 및 주요 추진 업무

1. 기본 방향

- 제3기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2012년~2014년)」이 본격적으로 수행되는 해로서, 5대 전략목표(23개 성과목표), 특별사업 및 기획사업 등에서 다양한 인권수요를 반영하고자 노력함.
- 2013년은 유엔에서 파리원칙이 채택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고, 이를 계기로 위원회의 모범적인 활동 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함.
-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제적 수준의 법적,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 제19대 국회에서 「인권기본법」, 「인권교육법」, 「차별금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인권 법률이 제정되도록 노력함.
- 제18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인권공약 이행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친화적 정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인권위의 위상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
- 최근 국제인권흐름에 부합하여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서의 인권경영의 확산과, 정보화 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정보인권 현안에 대응하고, 북한인권 및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함.
- 2013년도 유엔 인권이사회의 UPR 결과보고서 채택 이후 정부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인권조약의 국내이행 강화 등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을 촉진함.
- 경제 불황의 영향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어 노인, 아동, 빈곤계층, 저임금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함.

2. 주요 추진 업무

① 기본적인 권의 제도적 보장·강화

- 정부의 과도한 대응으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었다는 평가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심의위원회 등 행정규제기구에 대한 제도 평가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이버 수사와 디지털 증거수집 관련 관행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자유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노력함. 또한 생명권 존중을 위한 자살예방, 연명치료중단 등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함.
- 새로운 사회권의 확대 증진을 위해 간접고용노동자, 보육교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장·증진하고, 노선버스 운수노동자의 근로개선 실태파악, 사회복지사의 노동인권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함.
- 인권제도의 기반구축 및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강화를 위해 차별금지법, 인권기본법 등 인권법령 마련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고, 영역별·분야별 인권지수를 개발하고, 국제인권조약, UPR 이행 모니터링 및 인권기준의 정착방안을 모색함.

②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 경제 불황 장기화로 양극화가 심화되어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음. 특히 다문화 이주가족의 해체로 아동보호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아동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방안 검토,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 등 적극적으로 대안을 강구함.
- 각종 시설생활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외국인보호시설의 대안시설을 모색하고, 아동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

③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

- 위원회 4대 기능 중 하나인 조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찰·경찰·군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상시적 모니터링과 기획조사·직권조사를 강화하고, 진정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 ADR(대안적 분쟁해결) 모델 정착, 각종 집회·시위 대응 매뉴얼 개발을 통한 현안대응 능력을 제고함.
- 상담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상담 시스템과 스마트폰 세대를 위한 SNS 상담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역주민의 인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인권상담과 인권상담네트워킹을 운영함.

④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 인권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 인권교육법 법제화, 성장단계별 인권교육환경 구축,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과 인권친화적 교과서 도입을 위해 노력함.
- 인권교육의 확산을 위해 대상별 인권교육을 확대하여 지방의회 의원·공무원·학교관리자·군 등 정책리더교육과 전문 강사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인권분야·아동분야·노인분야·방송언론분야·다문화분야·장애인시설 관련자 등 인권감수성교육을 확대 운영함.
-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과 사이버 인권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여 양적운영 중심에서 질적운영 중심으로 전환하고, 모바일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며 유비쿼터스(Ubiquitous)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재를 개발함. 또한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잡지·인권영화 등을 보급함.

5 차별시정 강화

- 차별시정 강화를 위해 장애인차별시정, 성차별시정, 연령·학력 등으로 인한 차별개선 및 성희롱 예방활동을 강화함
- 장애인차별시정강화를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국가보고서를 마련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관련 성과 및 평가와,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국제학술대회 추진함. 특히,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 마련, 장애유무·연령 등에 관계없는 보편적 디자인 제품 확산을 위한 노력과, 정신적 장애인의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함.
- 고용부분에서의 성차별 시정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등 관계기관과의 정책협의를 함께 여성감정노동자의 인권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가출청소년, 비정규직 여성, 여성운전기사 등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함. 또한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2차 성폭력 피해방지, 병력자에 대한 차별개선 방안을 마련함.

6 특별사업·기획사업

- 특별사업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의견표명 등을 추진하고, 북한인권 인식증진을 위한 자료를 개발하고, 국제적 북한인권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함.
- 기획사업인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해외진출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실태조사 실시 및 인권교육 강화, 인권경영에 대한 국내공감대형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포럼을 확대 운영하며, ICC 기업과인권 실무그룹 활동을 통해 내실있는 국제협력 활동 강화
- 개인정보법이 제정되었음에도 개인정보 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정보인권의 증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스마트기기에 의한 노동권침해 사례 분석, 인터넷의 차별없는 접근 방안을 모색함.

2013년 업무계획 총괄도

비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명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한다

5대 전략 목표 성과 목표

I. 기본적인권의 제도적 보장강화

- 1. 자유권의 보장·강화
- 2. 사회권의 확대·증진
- 3.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강화
- 4. 군인권 증진과 병역제도 개선
- 5. 법 제·개정 등 인권제도 기반구축
- 6. 인권지수 개발

II.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 1. 다문화사회 이주민인권증진
- 2. 노인인권 향상
- 3. 아동·청소년 인권향상
- 4. 시설 생활인의 인권보장

III.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

- 1. 기획조사 확대
- 2. 조사구제의 실효성 강화
- 3. 인권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
- 4. 지역주민의 인권접근성 증진

IV.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준중문화 확산

- 1. 인권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 2. 인권교육 강화 및 확산
- 3. 인권 콘텐츠 개발 등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V. 차별시정 강화

- 1. 장애인차별시정 강화
- 2. 성차별 시정 강화
- 3. 연령·학력 등으로 인한 차별개선
- 4. 성희롱 예방활동 강화
- 5. 종교에 의한 차별 개선

<특별사업>

- 1.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기획사업>

- 1.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
- 2. 정보인권 증진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인권위 역량강화)

- 1. 위원회 독립성 강화
- 2. 국내외 협력 강화
- 3.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III. 2013년도 세부목표별 업무계획

I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강화

1. 자유권의 보장·강화

□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권의 실질적 보장

-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기구로 구성되어 있어 표현의 자유 실현에 장애적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 두 심의위원회제도를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표현의 자유보장 측면에서 방송 및 정보 규제기구 제도 평가
- 표현의 자유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개선방안 강구

- 2012년 사업으로 진행하였던 “사이버수사 및 디지털증거수집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및 재판실무에서 갈수록 비중을 더해가고 있는 사이버수사 및 디지털증거수집 관련 법령과 관행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디지털증거 압수대상의 명문화,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 필터팀을 통한 필터링제도 운영
- 압수한 디지털증거 환부 및 폐기절차 마련
- 다양한 압수수색 집행방법 및 절차마련, 새로운 압수수색제도 신설
- 우연히 발견된 증거의 증거능력 부정원칙 명문화

□ 생명권 및 생명윤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판단기준 마련

- 생명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과 기준을 마련하고, 초기배아 생명에 대한 생명윤리 정립과 관련된 판단기준이 필요함.
-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설정 및 집행에 있어서 생명권의 최대한 존중되도록 함.
- ※ 독일 기본법 제2조 제2항, 일본헌법 제13조, 포르투갈헌법 제24조, 세계인권선언 제3조, 국제인권조약B규약 제6조 제1항 등에서 규정

- 생명윤리에 관한 판단기준 검토(「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배아연구 내지 배아생명에 대한 윤리적 논란, 환자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논란 예상됨
 - 유전자 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의 규율 완화, 유전자은행 등의 적정화 및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검토
-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가이드라인 설정시 철저히 모니터링 필요

□ 자살 원인의 조사연구 및 자살예방 활동 강화

- 노인 자살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아동 자살율도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에서 언급될 정도로 우리사회에서 자살률이 심각한 상황임으로 이에 단편적인 조치로의 자살예방보다는 대상별 자살의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을 증진하려 함.

- 자살 예방 관련 문헌 및 관계부처 정책 모니터링
- 청소년, 노인 등 자살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 관련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2. 사회권의 확대 · 증진

□ 취약계층의 노동권 등 사회권 보장·증진

- 사회의 양극화 현상 심화에 따른 노동 취약계층 인권개선, 그리고 사회보장권, 주거권, 건강권 분야에 있어 취약계층의 인권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2009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로부터도 사회권 증진 관련 다수의 권고를 받음

- 간접고용 노동자 등 근로빈곤층의 노동권 개선 방안 검토
- 보육교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정책 검토
- 사회보장권, 주거권, 건강권 등 사회권 현안에 대한 대응

□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 사회복지사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나 저임금, 구조적 장시간 근로, 폭언·폭행·성희롱 등에의 노출, 소진(burnout)현상 등 인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전체적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이들의 인권개선과 복지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강구 필요.

- 사회복지사의 근로조건, 노동관계, 인권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국가 정책 및 법령 분석
- 사회복지사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강구

3.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강화

□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 강화

- UN의 핵심 인권조약 조문에 대한 분석 관련 국내 법령, 정책, 제도 등의 현황, 국내이행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국내이행 촉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소개 및 홍보, 적용 가능성 논의하고, 미가입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검토하여 국제인권규범 시스템의 참여를 확대함.
- 선진적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소개, 번역, 국내의 시사점 및 적용 가능성 등 논의
- 각 국제인권조약의 최종견해에 대한 관련 국제인권기준 및 국내기준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하여 권고사항에 대한 국내이행 모니터링 강화
-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가입 검토

□ 국제인권시스템 현황에 관한 연구

- 기존 자료 중 UPR, 특별절차, 유엔 조약기구 등 유엔 인권시스템의 개요 및 현황을 정리하고, 유보조항의 현황, 한국의 조약기구 가입현황 및 미가입 협약 현황 등은 법제분석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국제인권조약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국제인권조약 및 UPR 국가보고서 의견표명 보고서 작성할 때나 또는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 관련 정책권고 등에 활용하려 함
- UPR, 특별절차, 유엔조약기구 등 전반적 유엔 인권시스템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한 문헌 연구
- 유보조항, 한국의 미가입협약 등에 대한 법제분석 및 정책연구

□ 세계국가인권기구의 현황 연구

- 국가인권기구는 국가마다 국가인권위원회, 옴부즈맨, 인권센터 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되어 다른 권한·기능을 가지고 인권보호 및 증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013년은 파리원칙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써, 세계 국가인권기구의 유형·기능·활동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향후 위원회의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내외활동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설립근거, 위원구성, 조직 및 예산, 주요기능 및 활동에 대한 현황조사

□ UPR 이행 모니터링 및 인권기준의 정착방안 모색

- 유엔인권이사회의 제2차 UPR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통해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강화 및 국내 인권상황 개선.
- 유엔인권메커니즘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UPR에 대한 국내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의 인권의식 고양.

-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 UPR 권고 이행점검을 위한 연차별 계획, 권고사항의 우선순위 선정, 각 권고사항별 이행점검목록 등 마련
- UPR 권고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위원회, 정부, NGO, 학계 등이 UPR 권고사항의 의미, 우선순위 등을 공유하고,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한 방안마련과 대국민 홍보

□ 신체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국제조약 모니터링

-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및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독립보고서를 준비함.
- 강제실종협약,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검토를 통해 신체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모색이 필요함.

- 신체적 자유와 관련된 부분의 국내이행 모니터링 강화 및 제도의 미비점 분석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및 강제실종협약 가입 검토
-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간담회 등 개최

□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모니터링 강화

-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49차 회의(2011. 7. 19.)의 최종 견해(총 49개) 중 2012년에는 입법 및 사법분야 이행 과제 확인 및 이행방안을 검토하였으며, 2013년, 2014년에는 세부과제를 타겟으로 하여 이행 촉진 업무를 수행함.
- 국회의 여성 인권 관련 입법 상황, 법원의 판례, 정부의 여성 인권 정책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 협약 이행상황 중간 점검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협약 이행 촉진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기구 구성
 -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개별 국제 인권 조약별 모니터링 기구보다는 통합된 형태의 국제 인권 조약 모니터링 기구를 구성하고 협약별 분과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대비 및 이행 모니터링

- 우리 정부는 2011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년 말 또는 2014년 초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예정됨.
- 심의에 대비하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모니터링에 기초하여 회기 전 실무그룹 및 심의회기에 제출할 의견서를 마련하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에 기여함.
-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모니터링
-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점검을 위한 간담회 등 개최
- 회기전 실무그룹 회의에 질의목록 관련 의견서 제출
- 심의회기에 위원회의 의견서 제출

4. 군인권 증진과 병역제도 개선

□ 군 의료관리 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 국방부 2010년 국방통계 자료에 의하면, 군 병원 외래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군 의료 장비 및 인력의 부족이나 의료접근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됨.
-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군 복무기간 동안 양질의 진료 및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으로, 군 의료지원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함.

- 군대내 의료 접근권 보장 실태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 군대내 환자의 진료·처방·치료의 신속성 및 적절성, 외래진료의 자율성 보장 조사 및 분석
- 외국의 의료시설 및 접근성을 파악하고, 우리군의 현황과 비교분석, 시사점 연구
- 군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언

□ 군 징계입창 제도 개선

- 군 징계 입창 제도에 대하여, 행정벌 대상자를 형사벌에 해당하는 구금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적법절차 및 법치주의라는 헌법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헌법」 제12조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에 관련된 위헌성 여부 검토 및 대안 제시가 필요함.

- 군 징계 입창제도 관련 실태 및 현황 조사
- 「군 징계 입창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 각 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 군대 내 여성인권 증진

- 2012.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제언을 기초로 여군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권고하여 여군의 인권 신장을 강화함.

- 여군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권고(안) 도출 및 전문가·관계기관 정책협의 실시
- 여군 인권보호 정책(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

5. 법 제개정 등 인권제도 기반구축

□ 인권친화적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기반구축

- 입법예고기간 내 법령을 검토하고, 인권친화적 법령의 모니터링 기능을 체계화하여 법제개선 검토의 총괄적 기능을 수행하고,
- 위원회의 사법개입의 활성화를 위해 법원·헌재·법조단체 등과 정례적 협의채널을 구축, 의견 제출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함.

- 법령, 정책 검토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화 방안 마련
- 언론에 보도된 인권 이슈 사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법원, 헌재에 대한 의견 제출 활성화

□ 인권기본법 제정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조직 및 조사절차에 관한 법으로 인권전반에 관한 기본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인권문제가 국가적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절차 마련(인권정치의 제도화).

- 인권기본법(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작업
 - 필요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등 개최
- 인권기본법(안) 내용 마련을 위한 심층작업
 - 조문작업
 -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

□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 개선 및 강화

- 위원회는 2012.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하였으나, 지자체 관계자의 인식이 미흡하거나 이행 노력이 소극적이거나 인권업무의 구체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어려움 등이 있음.
-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인권보호 제도화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제도화 이행을 독려하여 지자체 인권제도화를 구축·강화하고자 함.

- 지자체 관계자 대상 워크숍 개최

-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 등 개최(3개 인권사무소 주최 포함)
- 지자체 인권조례의 실효적 이행 모니터링
 -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고 지자체 정책 및 제반 사업에 실제적 운용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모니터링 작업 진행
- 인권조례 표준안 보급 및 인권적 관점에서 자치법규의 개정 촉구
 - 위원회 준비 중인 인권기본조례 표준안 보급과 이에 기준한 기 조례 및 규칙 등에 대한 인권적 관점에서의 재해석과 개정 촉구
- 인권조례를 중심으로 지역 인권공동체 형성에 나서는 현안과 이슈에 대한 선도적 논의력 확보
 - 인권조례 전국모임의 상시적 활용과 지속적인 연구과제 선정 공유

□ 인권NAP 권고에 따른 모니터링 및 정책협의 강화

- 위원회 권고 이후 정부(법무부) 인권NAP 이행 여부 확인 등 인권NAP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여부 확인 및 권고이행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 정책협의 강화.

- 인권NAP 이행 모니터링
- 인권NAP 1차년도 이행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개최
- 관련 부처와 협의

6. 인권지수 개발

□ 영역별, 분야별 인권지표 방향 설정 및 개발추진

○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1차년도 사업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 풀 등 기반구축(2012)'에 따른 지표 선정 및 지수 개발.

- 관련 연구용역 추진
- 국가인권지수 마련에 대한 전문가 및 정부부처 의견 수렴
- 영역별 및 지역 지표 선정 및 지수 개발

※ 국가인권지표 및 지수 연차별 개발 일정

- 1차 년도(2012) 국가인권지수 지표 풀 구축
- 2차 년도(2013) 국가인권지수 측정을 위한 지표 선정 및 모의 운영
- 3차 년도(2014) 국가인권지수 발표 및 운영

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1. 다문화 사회 이주민 인권 증진

□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이행 모니터링

○ 2012. 2.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국무총리실 등 10개 부처에 이행권고 하였고, 동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이주민 정책방향 등에 대해 정부의 이주민·외국인에 대한 각종 법령·정책·제도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이행강화 점검 필요함.

- 현장·정책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
 - 이주민권에 관심 있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로 구성
 - 현장·정책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결과보고
- '이주민권가이드라인'에 의거한 분기별 이주 관련정책·법령·제도, 국민인식, 정규 교육과정 등 실태 파악
- 정부의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이행 실태보고서(가칭)을 발간, 토론회 등 개최
- 미이행된 사항, 발굴된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 추진 및 정책권고 검토,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에 반영

□ 가족 해체에 따른 이주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 결혼이주민과 이주노동자의 급속한 증가(결혼이주민 14만 명, 이주노동자 55만 명)로 실질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

○ 특히, 부부 당사자 간의 혼인파장으로 인하여 가족이 해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아동은 양육권, 교육권, 건강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여 우리 사회의 주변인화가 우려됨.

○ 또한, 국제결혼 배우자의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들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음.

- 이주가족 해체로 인한 이주아동 현황 파악

- 중도입국 이주아동 현황 실태 파악
- 이주가족 해체로 인한 이주아동 및 중도입국 이주아동의 교육권, 건강권, 양육권 등의 인권침해 사례조사, 인권보호 정책대안 마련 등
- 최종결과보고서는 이주인권 정책 자료로 활용

□ 농·축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 2011. 7월 말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중 농·축산업 분야 종사자는 약 1만 명으로 미등록 발생률이 14.8%로 기타 제조업(6%)에 비해 상당히 높음.
 - 사업주를 제외한 노동자가 1~2명인 소규모 농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도심 가까이 자리하거나 공단을 이루는 제조업체와 달리 외곽에 고립돼 있는 경우가 많음.
- 농·축산업 분야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 현장조사, 기관조사, 농축산업 분야 이주노동자 관련 법률, 제도·정책 등 검토
 - 농·축산업분야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안 마련
 - 국제인권기준 및 주요 국가의 정책사례 검토

□ 인권선진국의 대안적 외국인보호시설 벤치마킹을 위한 모니터링 추진

- 최근 외국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합법적이지 않은 상태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 체류하다가 단속되는 경우, 미성년자가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외국인보호제도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국격에 맞는 인권 친화적 대안적 보호시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호주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적 보호시설 운영효과 검토
 - 호주인권위원회의 외국인보호시설 운영가이드라인 및 미등록 이주아동, 여성 등 특수 피보호자 보호 및 지원체계에 대한 현장 세미나 등을 통한 벤치마킹 사례 파악
 - 대안적 보호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난민신청자에 대한 업무처리 및 처

우 현황 파악

- 향후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어야 할 대안적 보호시설 운영,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등

□ 외국인보호시설의 인권보호 강화(방문조사)

- 2013년에는 난민정착지원소(영종도)가 개소될 예정인 바, 동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인권 친화적 난민정착지원소가 될 수 있도록 정책대안 마련 필요.

- 난민 정착시설에 보호 중인 난민의 현황 조사
- 여성, 아동 등 특수 피보호자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 보호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난민신청자에 대한 업무처리 및 처우 현황
- 인권 친화적 보호시설 운영, 환경개선을 위한 권고안 제시 등

□ 난민 및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정책토론회 개최

-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을 계기로 관련 법령 및 제도들이 난민인권 보호 및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
- 노동부는 2012. 8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리스트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의 직업선택권 제한 가능성,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해 강제추방을 당하는 사례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

- 난민 전문가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난민법 및 난민법 시행령·시행 규칙의 난민 인권침해 요소 발굴
- 이주노동자 인권 전문가·이주노동자 인권현장 활동가 토론회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관련 대책의 이행실태 결과 점검
-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통해 난민 및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권고안 제시 등

□ 이주민을 위한 <행복나눔인권음악회> 개최

- 이론적·주입식 인권증진 캠페인에서 탈피하여 문화·예술 공연을 통하여 인권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1회성 행사가 아닌 기수별, 지역별 계속사업으로 확대하여 지역인권문화의 저변 확산에 기여함.

- 관내 예술단체 등과 공동으로 인권음악회 개최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관내 예술단체와의 협의 추진
 - 공연내용에 이주민들을 위한 특성화된 내용(각국 전통음악 공연 등) 포함
 - 관련 공공기관 및 지역 방송사와의 공동추진도 고려하여 추진
-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어울림행사 실시
 - 마술공연 또는 레크레이션 등 문화·예능공연 실시
 - 이주민 및 원주민들의 참여마당(플렛퀴즈타임, 포토타임 등)
-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홍보캠페인 실시
 - 인권위 소개 및 인권영화 상영 등 실시
 - 현수막 및 홍보배너 제작·설치, 홍보리플릿 및 기념품 제작·배부

2. 노인 인권 향상

□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제5기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노인인권 개선 종합권고에 따른 정부정책 모니터링 및 2012년도 실태조사 “노인 집중취업분야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 등 후속조치가 필요함.

- 노인 당사자의 시각에서 노인인권 상황 모니터링
- “노인 집중취업분야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
- 노인인권 정책 토론회 개최 및 시급한 주제에 대해 정책권고와 연계
 - 건강권, 주거권, 노인자살 등의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 노인인권증진 사업 및 권리구제를 위한 노인차별 모니터링 실시
-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위한 인권교육, 워크숍 등 개최

□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 아파트 경비직, 학교 경비(야간)직 등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의 인권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임.
- 감시단속직 노인 근로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 감시단속직 노인 근로자의 인권개선방안 검토

3. 아동·청소년 인권향상

□ 아동인권 보장 기반 구축 및 아동인권 개선정책 검토

- 아동은 권리의 주체이지만 여전히 자유권의 보장이나 참여권 등의 보장이 미흡하고 그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등 국제인권기준에 근거하여 아동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아동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 정책검토(초중등교육법 등 법령 검토)
- 실종아동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검토
- 아동인권 관련 현안 이슈 대응

4. 시설 생활인의 인권보장

□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

- 「아동복지법」 상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아동보호치료시설은 국가가 직접 아동을 보호·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상존해 있고, 아동공동생활가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이 되면 신규 조사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 아동복지시설 약 3곳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

※ 2012년도에는 소년원과 분류심사원 방문조사

□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점검

○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2년도 방문조사 (5개소) 결과에 따른 개선효과를 확대하고, 지역별로 방문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점검 실시 후 개선과 보완을 유도함.

- 정신보건시설 인권상황에 대한 점검 실시
- 전국 정신보건시설의 입·퇴원관리, 작업, 격리·강박 등의 문제점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정신보건시설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활성화

○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사건 처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진정사건 분석을 통해 제기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정책 권고 기능을 활성화함.

- 제도 개선과제 선정을 위한 진정사건 분석
- 관련 전문가, 시설관계자 등 의견 수렴 및 토론회 개최
- 필요시 관계부처와 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
- 관련 제도 개선 권고안 마련

Ⅲ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

1. 기획조사 확대

□ 검·경·군 관련 기획조사 강화

- 검경군 관련 개별진정의 권리구제 외에 기획조사를 통해 그 원인이 되는 관행, 정책, 법, 제도, 의식,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수사과정 등에서 인권침해적 요소를 제거하고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음.
 - 군대내 또는 전·의경 폭행·가혹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관련 규정 및 제도, 관행 등 운영실태 파악
-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등 기획조사
 - 조사팀 구성, 현장 실지조사(피해자, 참고인, 가해자 등) 보강조사
- 군대 내 또는 전·의경 폭행 및 가혹행위 등 기획조사(필요시 확대여부 검토)
 - 조사반 구성, 현장 실지조사(피해자, 참고인, 가해자 등) 및 보강조사
- 상시적인 모니터링(진정사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사안 발생 시 즉시 조사반을 구성하여 기획조사 실시

□ 육군 교도소 및 영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방문조사

- 최근 군 내 구타·가혹행위 및 사망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군 영창 제도자체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 되고 있음.
- 이에 이번 방문조사를 통해 육군 교도소 및 영창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및 관련 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군 영창 및 교도소 방문조사 4회 실시 :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 교도소 및 영창 내 기본시설 운영 실태(호실, 화장실, 면회실, 징벌방, 종교시설 등)
- 수용자에 대한 호칭, 폭언, 정자세 및 반성문 강요 등 인권침해 요인 실태
- 운동, 종교 활동, 접견교통권 보장 등에 대한 실태
- 수용자에 대한 진정권 안내 등 권리고지 실태

□ 영장제도의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

- 체포영장의 형식적 서면심사, 긴급체포 후 사후영장배제, 긴급 압수수색의 요건의 불확실성 등 적법절차원칙의 제도적 미비 및 잘못된 수사관행에 따라 인권침해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임.
- 이에 현행 영장제도가 적법절차 등 인권기준에 부합하게 집행되고 운영되는지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정책개선 방안 모색.

- 영장제도와 관련된 국내 법규 및 제도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 영장의 청구(신청), 심사, 발부, 집행,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 현황 파악
- 영장제도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및 주요 국가의 관련 법규 및 제도 분석
- 영장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검토

□ 집회·시위 현안대응 인권지킴이 활동 활성화

- 집회현장에서의 과잉진압, 불법체포, 과도한 이동금지, 불신검문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 인권지킴이 활동을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인권지킴이 운영 및 방법에 관한 매뉴얼 정비
- 인권지킴이 운영체계 및 비상연락망 마련
- 집회주최 측, 경찰청 정보·경비 지휘라인 사전 협의체계 구축
- 인권지킴이 안전을 위한 장비 정비(복장, 채증자료 등)

□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프로젝트 수행학생을 중심으로

- 2012. 10. <서울대인권센터> 발표에 따르면 교수에 의한 대학원생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대학원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인권침해(폭력, 성폭력, 인격모독, 사생활 감시 등)에 노출되어 있는 약자일 수 있음.

- 전국 대학원생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현황 파악
- 계열별 구분 필요(공학·자연과학·의학, 예술·체육, 인문사회과학)
- 최종결과물은 향후 정책 자료로 활용 등

□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기획조사 강화

-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기획조사를 통해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
- 진정사건 조사 및 언론 보도 내용 등을 모니터링 하여 기획조사 현안 발굴(외부 전문가 참여)
- 2012년 실시한 실태조사 후속조치에 따른 정책 개선 과제 발굴
 - 종교차별 실태조사, 공공부문 청사 관리용역 고용차별 실태조사, 공공기관 차등정년 실태와 차별 개선방안 실태조사 등

□ 장애인 시설 등 기획조사 강화

- 언론 모니터링 및 인권단체와 시설 종사자 등의 제보·민원에 대한 적극적 기초조사 실시. 필요시 시설 방문조사 또는 직권조사 추진.
- 기획조사를 통해 장애인 시설 내 인권침해 요소 사전 예방 및 인권보장 방안 모색.
- 언론, 단체, 제보, 민원 등 현안사항 기초조사
- 기초조사 토대로 필요시 방문·직권조사 추진

2. 조사구제의 실효성 강화

□ 진정사건의 효율적 처리 개선 방안

- 진정인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조사중해결 강화, 진정사건의 신속처리로 인한 진정인 만족도 제고, 인용사건의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함.
- 조사구제규칙 등 조사관련 규정의 개선, 전산시스템화 및 각종 통계처리 개선으로 업무효율화를 강화함.
- 기각·각하 사건영역에서의 조사중해결 강화를 위한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 조사구제규칙, 운영규칙 등 조사관련 규정 분석
- 전산시스템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강화
 - 권고사후 관리 시스템 개선, 검색기능 강화
- 각종 통계처리 개선

□ ADR 제도의 정착 및 운영

- ADR 모델 확산이라는 대외적 환경에 대응하고 인권친화적 ADR 모델의 확립을 통해 효과적이고 자율적인 권리구제 도모
 - *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장애분야 ADR 사례집을 발간하여 조사관의 사건 처리에 실질적 도움을 줌으로써 사건 처리의 효율성 제고

- 위원회 권리구제 절차 및 ADR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위원회 ADR 제도의 실제적용과 사례분석, 홍보 및 전문인력 관리체계 정비
- 조사관들에 대한 조정 관련 교육
 - 조정(mediation) 관련 외부 전문가를 초빙, 외부의 조정 전문 단체와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장애분야의 모범적 합의종결, 조사중해결 사건 사례집 발간
 - 장애사건 유형별 합의종결, 조사중해결 사례 정리 및 모음
 - 신규 조사관들이 조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집 발간

□ 차별 진정사건 효율적 처리 방안 마련

- 2007년 이후 진정사건의 권고 판단 근거 등을 보강하여 차별판단지침을 개정, 차별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업무 수행 시 판단의 통일성 및 효율성·전문성 강화로 국민들의 권리 구제 효과 증대

- 위원회 주요 권고 사건에 대한 분석
- 각 영역별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
- 차별판단지침 개정

□ 장애인시설 조사 체크리스트 개발

- 장애인시설 관련 기획조사 및 진정사건이 증가하였으나, 장애인시설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 부재로 인해 조사에 어려움이 많음.
- 이에 장애인시설 조사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장애인시설 조사 시 기본 틀을 제공함으로써 조사의 일관성, 신속성 향상 및 관련 시설 배포를 통하여 예방적 효과 제고.

- 장애인시설 조사 체크리스트 작성 및 의견수렴
- 장애인시설 조사 체크리스트 책자 발간

□ 장애차별 사건 처리의 체계화, 매뉴얼 개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사건 처리의 체계화를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 진정사건 조사 매뉴얼을 발간하여 조사관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진정 사건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함 |
|---|
- 장애차별사건 조사 업무편람(매뉴얼) 발간
 - 정신보건시설 조사 매뉴얼 보완 등
 - 진정사건 분석을 통한 제도, 관행의 개선
 - 유사사례 지속 발생 또는 여러 시설에 공통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사안은 상위 감독기관에 권고를 통한 정책, 관행의 개선

3. 인권상담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전화기로 상담이 어려운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 상담체계 구축 등 위원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 업무 수행기관으로서 자체 상담시스템 추가 구축 필요 <화상·채팅·SNS 상담시스템 구현>. - 수화를 사용하는 장애인 중에도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기 꺼리는 경우 화상이 아닌 모바일 채팅 상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 스마트폰 보급 대중화 및 사용자 급증에 따라 SNS 상담체계 구축 등 |
|--|
- 2012년 CTI 구축에 이어 화상·채팅·SNS 상담시스템 구축
 -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상담 시스템, 스마트폰 보급 대중화에 따라 학생, 직장인 등 스마트폰 세대를 위한 SNS 채팅 상담시스템 등
 - 새로운 하드웨어 도입에 따라 전화, 방문, 민원 업무 등 인권상담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체계 재편 추진
 - 각 부서와 TF 운영 검토, 고객만족도에 대해 조사방식 검토

□ 상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상담역량 강화

- 위원회 관문으로서 인권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역량을 강화하여 상담 만족도 및 권리구제 효과성을 제고함.
- 감정노동이 가장 심한 상담원 보호를 위해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함.
- 인권 상담관련 인권·시민단체와 일상적 협력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 인권현안 및 상담사례 등 공유함.

○ 전문상담원의 역량강화

- '인권상담 전문교육 프로그램' 실시, '상담·민원사례 발표회' 개최
- 전문상담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상담 네트워크 구축
- 상담원의 각 부서 업무협조사항 주기적 점검(정기적 간담회 개최)
- 전문상담위원의 탄력적 모집

○ 전문상담원 처우개선

- 전문상담원에 대한 '소진방지 프로그램' 실시(연 1회)
- 인권위가 권고한 감정노동자 인권개선사항 자체 점검 및 개선점 발굴
- 인권상담 관련 기관·단체에 1월 이내의 교육파견제 검토 등

□ 인권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을 찾아가는 인권상담 활성화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 인권취약계층(지역)의 위원회 접근기회 확대
- 수요자의 욕구에 맞춘 상담활동을 통한 대국민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대중적 홍보수단으로 기관 이미지 제고 및 대국민 친밀도 제고에 기여함.

○ 인권상담 취약지역 및 계층의 다변화

- 이주노동자, 지역아동센터, 난민, 장애, 노인, 도서·벽지의 지역주민 등

○ 순회상담 추진방식을 다양하게 편성 운영

- 인권상담센터 실무자 중심의 순회상담(연5회 정도)
- 위원회 전부서참여하는 순회상담(연1회 정도)
- 상담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개별 밀착상담 추진

□ 진정함 점검 및 교육

○ 관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진정권 보장을 위해 진정함 설치, 안내문 부착, 진정서 및 면전진정 신청서 교부, 진정함 관리자 유무여부 등 종합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 특히 면전진정 및 진정접수가 저조한 시설을 중심으로 진정함 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진정사각지대 진정함 운영실태 점검

- 대상 : 1년간 진정접수 및 면전진정 신청이 저조한 관할지역내 정신의료기관 및 다수인보호시설
- 방식 : 조사관이 방문하여 진정함 운영실태 점검

4. 지역주민의 인권접근성 증진

□ 인권체험관, 인권테마역사 운영

○ 각 인권사무소별로 인권테마역사 형태로 체험관을 운영하여 지역민들의 호응도가 높음.

○ 시민들의 일상 공간인 지하철에서 인권감수성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이해와 대국민 홍보를 전개함.

○ 인권체험관 개관

- 인권체험관 홍보 활동 전개, 리플릿, 동영상 등 제작 및 배포, 지역 전광판 등 시설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연중 홍보

○ 시설물에 대한 보강 및 콘텐츠 교체

- 노후 시설물에 대한 교체
- 최근 결정례, 위원회 최근 동향 등을 콘텐츠 교체

□ 지역사회 이주민 차별의식 캠페인

○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많은 정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차별적 시선과 인권 침해적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주민 관련 활동가 워크숍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다문화에 대한 문화적 차이 및 인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편견을 해소하는 캠페인이 필요함.

- 이주인권 활동가 워크숍
 - 이주민 차별금지 관련 주제 선정, 차별인식 개선 캠페인 방법 논의
- 차별인식 개선 홍보
 - 지역신문, 방송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이주관련 기념일에 맞추어 주제별 대상을 선정하여 이주민 차별 금지 캠페인 진행
- 다문화 인권교육 강사 역량 발굴, 강사 지원협력, 찾아가는 다문화 인권교육 실시

□ 지역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 지역사무소의 경우 전국적인 인권이슈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어렵고, 인력 및 예산 운용의 한계 등으로 언론홍보에 대해 능동적, 체계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 등으로 지역민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현실임.
 - 일반시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양질의 인권정보 제공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홍보 필요성 대두 돼 매체홍보를 진행하고자 함.
- 지역 공중파를 적극 활용한 인권정보제공
 - 지역 언론매체, 인쇄매체 등을 통한 홍보활동의 강화
 - 웹블로그 운영, 뉴스레터 발행, 트위터 혹은 페이스북 활용 홍보
 - 시민참여형 인권기자단 운영

□ 인권사진 공모전, 전시회(대구)

- 대중적 문화콘텐츠인 사진을 통한 시민참여형 홍보를 활성화하고, 위원회의 지속적인 인권문화 콘텐츠 확보함.
- 인권 주제 선정 후 사진공모전 개최
 - 주제 분야 관련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요청 등 원활한 진행
 - 공모 사진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전시회 및 홍보 공간 활용

□ 상담서비스지도 보급 확대, 취약지역 순회상담 강화(대구)

- 찾아가는 인권상담 활성화로 권리구제 접근성 제고 및 인권의식을 개선하고, 상담서비스 지도 보급을 통해 인권상담 접근성을 증진함.

- 인권상담 취약지역 (격오지 등) 순회상담 추진으로 접근성 제고
- 취약지역 인권상담 시 인권교육 및 홍보, 유관기관 협의 병행 추진
- 상담서비스 지도 개선 및 보급 확대, 온라인 서비스 추진

□ 지역사회 인권연구모임 운영(광주)

- 민·관·학이 함께 하는 소통과 학습을 공유하고 있는 인권연구모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사회 인권역량의 확대와 관련기관의 인권감수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위원회 주요 전략과제 및 지역 주요 인권의제 중 주제를 선정하여 정기적인 학습모임 진행
 - 인권담론과 세부영역을 구분 배치하고 다양한 인권의제에 대한 논의 공간 확보
 - 관련 전문가 그룹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기반 형성을 통한 인권네트워크 모델 창출
 - 직원을 위시하여 관련기관 및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하고 멤버제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주제별 개방하는 방식의 운영

□ 지역 인권활동가 연수 프로그램(광주)

- 인권단체 활동가들과의 교류·협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위원회 및 지역사무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공동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여 위원회와의 협력관계 공고화에 기여하고자 함.
- 인권단체와 실제적인 연대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간 창출
 - 인권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더불어 각기 다른 영역에서의 세부 활동 내용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 지역 인권의제에 대한 공동의 책임의식 형성과 위원회와의 파트너십 형성
 - 위원회 정책 및 사업방향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인권의제발굴 시민참여 인권창안포럼 운영(대구)

- 인권영역별 권리주체 및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인권의제 발굴하고, 인권옹호 그룹 형성 및 협력을 강화함.
- 지역 주요 인권의제 및 핵심 참여자 선정 후 인권창안포럼 구성
- 지역의 다양한 인권전문가 참여보장, 온라인 활용 인권의제 발굴 동시 추진
- 정기적인 포럼 운영 : 의제 발굴 간담회, 토론회 개최 (격월 1회)
- 본부 관련부서와 포럼운영결과의 적극적인 공유 및 협력방안 협의 활성화
- 지역 유관 기관단체의 인권활동 추진 상황에 맞는 협력활동 추진

□ 지역 인권감수성 향상과정·리빙라이브러리(대구)

- 지역 시민들에 대한 인권위 홍보, 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역 내 인권 옹호 그룹과 인권강사 역량 형성, 교류협력을 강화함.
- 차별 당사자와 시민들 간 만남(인권 리빙라이브러리)을 통한 인권의식 향상.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단 운영과 관련 권역별 감수성향상과정 운영
- 지역 인권교육 강사단 지원을 위한 정기 간담회 개최
- 리빙라이브러리를 소수자 인권의제 발굴 및 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적극 활용

1. 인권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 인권교육 법제화 및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유엔의 인권교육훈련선언에서 모든 사람이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서 고등교육 및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조함.
-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역할과 기능을 제도화하기 위해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여론 조성 등 지속적 노력 추진.
- 인권교육 관련 관계부처 및 NGO, 해외 인권교육 전문기관 등과 다양한 협의방식·수단 모색 및 협의절차 마련 등 협의체계 제도화 추진.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교육관련 기관과의 협력 도모 및 정책권고 이행 모니터링

- 제19대 국회의원, 입법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법취지 설명회(간담회) 등 개최
- 인권교육 관련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인권과목 개설 확대
- 인권교육 포럼 개최 및 지역 인권교육 소모임 지원 등
- 학교폭력예방대책의 해외 우수사례 모니터링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이행 모니터링

□ 보육·유치원생 등 성장단계별 인권교육환경 구축

- 국제사회는 인권교육의 출발을 영유아기로 두고, 이 시기의 아동과 부모, 교사가 인권에 대한 전반적 개념을 이해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함.
- 유아 인권의 이해 및 유아를 향한 인권적 태도를 형성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유아교육환경 구축이 필요함.

- 보육 및 유치원 원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간담회) 실시
-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
- 보육·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의 네트워크 조성

□ 인권친화적 교과서 도입 유도 및 고등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 유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중점 추진대상인 대학교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지역 인권교육 실행거점으로서의 인권교육 연구중심대학(11개) 역할 강화 및 확대 운영.
-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의 인권 단위 확보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내 인권에 반하는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과정 개선을 촉진하고, 학교 인권교육의 제도화 기반을 조성함.

- 대학분야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모색
 - 총장 간담회 및 인권담당교수 워크숍 등 토론회 개최
 - MOU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인권위 실무수습과정 실시
- 제5기 학생·교사 교과서 모니터링 추진단 구성 및 워크숍, 모니터링단 회의 등 개최
- 학교인권교육의 목표, 방법, 내용에 대한 가이드 제시
- 전국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실천 시범연구학교 운영자 및 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한 운영 지원

2. 인권교육 강화 및 확산

□ 지방의원 등 입법부 직원을 포함한 인권리더십 향상과정

- 정책집행·결정자를 대상으로 인권리더십 향상과정 등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인권정책 전문가를 양성함.
- 지방의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로 지방행정 정책 및 각종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에 인권요소 반영 도모함.

- 일반 공무원(중앙, 지자체) 및 학교관리자 대상 인권 정책리더과정
-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대상 인권 정책리더과정

□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

- 최근 학교 폭력 증대 및 학생인권조례 시행 등으로 학교 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인력 양성이 시급함.
-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강사에 대한 워크숍 및 보수교육을 통해 유엔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인권 강사풀 활성화를 도모함.

- 법집행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 경찰 대상으로 해당 직무가 인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인권훈련을 보장하는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아동·청소년 대상 인권교육, 특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강사 양성과정
- 새로운 인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노인 인권분야, 정보인권분야 강사 양성
- 인권강사 워크숍 개최 및 분야별 강사단 확대 등 인권강사풀 활성화 도모

□ 기업인권 등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인권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인권교육 강화가 필요함.
- 방송·언론, 스포츠, 기업인권 등 새로운 분야의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증진 도모함.
- 기업인권 분야에 대한 지역확대로 전국 동시화 도모함.

- 기업 인권분야 감수성 과정 확대 운영
- 아동분야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 노인분야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 방송·언론 분야 대상 인권감수성 과정
- 스포츠분야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 방문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인권교육 시스템 구축

- 다문화 인권교육 협력 강화, 다문화 인권교육의 확산을 위해 분야별·대상별 맞춤형 교육 자료의 지속적 개발과 기 개발 교육자료 보완.
- 교육대상별 맞춤형 인권교육, 다문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자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이주민 인권증진 도모.
- 인권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강사단 보수교육을 통해 인권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인권 강사풀 활성화 도모.

- 다문화 분야 기관 네트워크 구축
 - 관계부처 및 NGO, 해외 인권교육 전문기관과의 협의방식·수단 모색 및 협의절차 마련 등 협의체 구성
- 다문화 분야 교육 콘텐츠 개발
 - 다문화 분야 인권실천사례집, 이주민 대상 인권교육 교안 제작
- 찾아가는 다문화인권교육 운영
- 다문화분야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 북한이탈주민, 하나센터, 하나원 관계자 포함
- 다문화 분야 전문강사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

□ 장애분야 인권교육 강화

- 일명 도가니 사건 등과 관련하여 장애아동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사회복지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인권교육이 강조됨.
- 「정신보건법」 제6조에 규정된 인권교육 의무화에 의거하여 정신보건 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

- 장애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 정신보건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기본, 심화)
- 장애인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 의무화과정

□ 노숙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강화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2012. 6. 8. 시행)이 노숙인 시설 종사자 대상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지정기관으로 위원회를 지정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인권교육 수요에 대응함.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인권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인권교육 강화 필요.

- 중간관리자, 신입직원대상, 노숙인 관련 공무원 등 교육대상을 분류하여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운영
- 1,500명 노숙인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 노숙인 분야 강사양성 과정운영을 통해 강사풀 구축

□ 군인 및 전의경 대상 인권교육 강화

- 유엔의 인권교육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는 표준화된 인권교육을 위해 군대분야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
- 군인 및 전·의경 대상 위원회 주관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에 기반한 상호존중 병영문화를 조성하여 부대 내 인권침해 등 사고예방.

- 군 인권강사 양성과정 및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
- 군인 및 전·의경 대상 인권특강 실시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인권교육 강화

- 학교 폭력이 심각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는 가장 큰 틀에서 우리 사회의 경쟁문화, 이에 따른 학교 내의 학생의 서열화가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
- 인권의식을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구현해 갈 수 있는 능력과 품성을 기르도록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학생 대상 인권교육을 강화.

-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인권교육 실시
-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인권교육 강사단 워크숍 개최
-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인권교육 운영 평가

-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노동인권을 아우르는 학생인권 관련 콘텐츠 개발(인권 콘텐츠 개발 사업에 포함)

□ 장애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강화

- 일명 '도가니 사건' 등과 관련하여 장애 아동의 인권침해는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음.
 - 가정 내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은 당사자들의 인권의식의 수준이 낮아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며 폭력이 가정 내(부모), 이웃 등 주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예방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장애아동 부모에 대한 인권교육과정운영
 - 장애 아동 당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시설에 찾아가는 인권 특강)
 - 장애분야 인권강사 양성 과정 운영(장애분야 인권교육에 포함)

□ 인권강사단 운영 및 인권캠프 개최

- 분야별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권강사단을 운영함으로써 인권교육의 전문화 및 체계화가 필요하고, 고등학생 대상 청소년노동인권캠프를 개최함으로써 인권의식 증진을 도모함.
 - 교과서 모니터링학생추진단을 운영함으로써 친인권적인 학교문화조성에 기여함.
- 고등학생 대상 청소년노동인권캠프 진행(지역 인권사무소)
 - 청소년노동인권강사단과 함께 캠프진행(1박2일)
 - 청소년노동인권강사단 운영(지역 인권사무소)
 - 노동인권강사단 운영 및 분야별 강사 운영
 - 교과서모니터링학생추진단 운영
 - 교과서 모니터링학생추진단 전국 워크숍(1회)
 - 모니터링학생추진단 지역 모임(4회)

3. 인권 콘텐츠 개발 등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인권교육 접근성 강화

- 사이버 인권교육과정의 확대운영을 통해 인권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콘텐츠를 신규 개발하여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함.
- 사이버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과 일반 시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수용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사이버인권교육센터의 홍보 및 다양한 교육방법을 도입함.

- 사이버 인권교육과정의 확대 운영(2012년 8개월 → 2013년 9개월)
- 사이버 인권교육 대상의 확대 및 홍보
 - 콘텐츠에 맞는 교육대상을 발굴 및 홍보활동 실시
- 콘텐츠 공동활용 기관의 확대
 - 자체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한 기관 및 단체를 대상
- ON-OFF라인 혼합교육 도입 확대 : 강사양성과정 등에서 사이버인권교육과정과 집합교육을 혼합하여 운영
- 2014년도에 원격연수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 실시
-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의 신규 개발(콘텐츠 개발에 포함)

	2012년	2013년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 이해 · 인권의 이해 심화 · 행정과 인권 · 성차별예방과정 · 장애차별예방과정 · 장애차별금지법의 이해 · 선생님을 위한 인권 플러스 (7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 이해 · 인권의 이해 심화 · 행정과 인권 · 성차별예방과정 · 장애차별예방과정 · 장애차별금지법의 이해 · 선생님을 위한 인권 플러스 · 차별 일반 · 군대와 인권 (9종 운영)
신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 일반 · 군대와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분야 · 정신보건 분야 · 다문화 분야

□ 모바일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고도화

-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이버(PC, 스마트폰) 인권교육 수강이 가능하도록 양질의 교육환경을 구축함.
 - 사이버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과 일반 시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수용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관리시스템(LMS) 개선함.
- 위원회 교육관리시스템(LMS)의 유지·보수 및 모바일 기반 인권교육 시스템 구축
 -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모바일 홈페이지(LMS) 운영
 - PC용 교육콘텐츠의 모바일용 콘텐츠로 전환
 -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이버 교육 콘텐츠의 개선
 - 변경된 법률이나 용어 등이 반영되지 못한 콘텐츠의 파악 및 수정

□ 교육대상별 맞춤형 인권교육 교재 및 콘텐츠 개발

-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의 확산을 위해 분야별·대상별 맞춤형 교육자료의 지속적 개발과 기 개발 교육자료를 보완함.
 - 인권교육의 의무화 및 다양한 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사이버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함.
 - UN인권교육훈련선언 제31조에서는 인권교육의 수단으로 연극, 음악 등 예술분야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바, 문학 및 예술작품 등 다양한 문화자료와 인권을 접목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함
- 표준교재 개발 및 수정
 - 아동·청소년 대상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교재
 - 공기업 종사자 등 공직유관단체 인권교육 교재 개발
 - 대학교 인권과목 개설을 위한 교재연구
 - 법집행분야, 복지시설 분야의 기존 교육자료(인권교육 기본용어, 인권 길라잡이-검찰편, 인권길라잡이-교정편, 초등학교인권교육) 보강
 - 사이버 교육 콘텐츠 개발 : 법집행분야(경찰), 인권교육 의무화 관련 사회복지분야(정신보건), 다문화사회 관련 이주인권 분야 등 3종 개발
 - 대중성 있는 문학작품을 통해 인권적 가치를 쉽게 이해하도록 인권도서 등 문화콘텐츠 개발(문화와 인권이야기)

□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전문 잡지 발간

- 격월간 <인권> 잡지를 발간·보급함으로써 국민들의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인권취약계층의 자기역량 강화.
- 인권 잡지를 통해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 인권의식 향상과 우리사회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함.

- 격월간 「인권」 잡지 발간
- 웹진 「인권」 보안 기능 강화와 모바일 서비스 개발
- 시각장애인 이용 서비스
- 시민기자단 운영

□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과 보급(인권영화 제작과 보급)

-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 제6조 제2항에서는 예술 등은 인권분야에서의 훈련과 인식증진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기술하면서 예술 활동을 통한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언급하고 있음.
- 따라서 대중적 친밀도와 영향력이 있는 매체인 영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인권영화 프로젝트'를 추진함.
- 인권영화의 극장개봉 이후 비디오와 DVD 출시, TV와 케이블방송 방영, 모바일 상영, 인터넷 상영, 국내외 영화제 상영 등 보급 확대 지속 추진하고, 학교·공공부문, 시민사회단체 등 인권교육 교재로 활용하도록 지원함.

- 인권 영화 등 콘텐츠 개발
 - 인권영화 중장기 계획과 2013년 위원회 중점과제와 연계한 영화 주제 (빈곤계층, 비정규직, 범죄피해자, 이주민 2세 인권관련 등) 선정: 내·외부 의견수렴, 감독선정위원회의 검토 등을 통한 주제 확정 예정
 - 다만, 기 확보된 예산으로는 장편영화 제작의 어려움을 감안, 단편 음니버스로 제작 방식 전환 등 검토
- 2012년 제작 10번째 인권영화 극장 개봉과 보급
 - 특별시사회, 언론시사회 등 개최, 영화제 출품 등

□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과 보급(인권작품 공모사업)

-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인권 관련 이슈를 국민들이 직접 다양한 매체와 기법으로 표현하도록 하여 인권에 대한 참여와 체험 기회 제공함.
 - 입상한 작품들을 인권교육·홍보콘텐츠로 활용하여 사회 저변의 인권 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함.
- 공모 아이템 선정과 공모 분야별 홍보·접수·심사·활용 기본계획 수립
 - 공모부분, 실무 분담(인권사무소 참여 여부) 등 개선 방안 마련
 - 교육기관, 인권단체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On-Off Line 홍보실시
 - 공모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기준에 의해 우수작품 선발
 - 전시회 및 공모전 사이트 업로드를 통해 입상한 작품 널리 활용

□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과 보급(인권을 주제로 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인권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함과 동시에 사회적 인식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공프로젝트가 필요함.
 - 따라서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역사 등 공공장소를 활용해 시각적인 디자인을 통해 인권을 해설하는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함.
- 서울특별시와 협의, 지하철역사 특정 공간(벽면, 바닥, 기존 시설물 등)에 세계인권선언의 전문과 30개 조항을 활용해 디자인함으로써 시민들이 매일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을 다짐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역사 내 주변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면서 세계인권선언을 이해할 수 있는 상징물(예: 세계인권선언탑 등)을 디자인하여 배치 추진

1. 장애인 차별시정 강화

□ 장애인자립생활 기반 구축

- 유럽, 미국 등에서는 1970년대부터 대형시설 폐기와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추세임. 우리나라도 점차 자립생활 지원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분절적인 정책 추진과 법·제도 개선은 장애당사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설 생활 장애인 인권실태와 자립생활 서비스 체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적 국가전략서(Road Map) 작성이 필요함.

- 장애인 자립생활 국가보고서 초안 보완
 -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 장애인 자립생활 국가보고서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의견 수렴
 -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 협의
 - 장애단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국가보고서 정책 권고 및 대국민 발표
 - 국가보고서 발표를 위한 대규모 토론회 개최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홍보 활동 및 문화 조성
 - 국회, 보건복지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관련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홍보 및 안내 등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기념 토론회

- 2013.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간 성과와 의미 등에 대한 토론회 개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인식제고 및 실효성을 강화하고, 토론회 개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의제 발굴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5주년 성과 및 평가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및 분석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상황 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 등
- 서울, 대전, 강원,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7개 지역 토론회 개최
 - 장애차별조사1과, 부산·대구·광주 인권사무소 공동 수행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으나, 대국민 인식 및 동 법 적용대상 기관의 인식 부족 등으로 장애인 차별 개선이 미흡함.
 - 또한 2013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거의 모든 대상기관에 적용됨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6개 지역 모니터링단 구성
 -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대구, 제주 등 6개 지역 모니터링단 구성
 - 장애차별조사1과, 부산·대구·광주 인권사무소 공동 수행
 - 모니터링 과제(안)
 - 사립 유치원 및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이용 모니터링 등
 - 모니터링 결과 관련 기관 협의
 - 모니터링 결과 자료집 발간 및 결과보고회 개최

□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국제학술대회

- 2013. 1월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최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 모색 등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
 - 국제학술대회 개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의제를 발굴함
- 평창 스페셜 올림픽 국제학술대회 개최(2013. 1. 31.)
 - 국제학술대회는 스페셜 올림픽과 병행하여 개최될 예정으로, 위원회는 스페셜올림픽위원회(Special Olympics International)와 공동으로 주최
 - 주제 : 발달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방향 모색

□ 정당한 편의제공 판단기준 연구(발달장애인 중심으로)

-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아인)은 2011년 말 기준으로 약 18만 3천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지적장애인이 약 16만 7천명, 자폐성장아인이 약 1만6천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은 삶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의사표현과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하여 학대, 방임, 성폭력,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에 매우 취약함.

※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

-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에 관한 실태조사
 -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 파악, 관련 국내·외 법령, 제도, 사례, 판례 및 정책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 연구
 -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 욕구 및 애로점 조사
 -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각종 제도 및 법령 개선안 제시 등
- 리플릿 작성 및 배포
 -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 관련 리플릿 작성 및 관련 기관 배포

□ 공공조달을 통한 보편적 설계 제품의 확산에 대한 연구

- 보편적 디자인이 공공기관 및 공공기반 시설 등에 적용되면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장애인, 비장애인을 막론하고 업무능률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 증진의 효과를 제고함.

※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을 의미(장애인권리협약 제2조는 국가의무로 규정)

- 장애인의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 접근성 실태 파악, 관련 국내 법령,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 연구
- 보편적 설계를 반영한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 관련 해외 법령 비교 연구, 국내·외 판례 및 외국 사례 연구
-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의 보편적 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각종 제도 및 법령 개선안 제시 등

- 공공조달을 통해 보편적 설계를 반영한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의 확대
※ 미국의 경우 재활법 제508조에서 보편적으로 설계된 전자기술의 사용을 연방정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 고용보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연구

- 현재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이 각 부처별, 정책별, 사업별로 분절·분산·중복되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직업재활과 고용으로 분절된 관리체계의 연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장애인 고용 관련 실태 파악, 국내 법령,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 연구
- 장애인 고용 관련 해외 법령 비교 연구, 국내·외 판례 및 외국 사례 연구
-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체계적인 고용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각종 제도 및 법령 개선안 포함) 등

□ 인터넷 중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인터넷 중독 어린이는 뇌 불균형 발달을 초래하고 폭력성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에 걸릴 수 있으며, “만5세-9세 어린이의 중독비율은 7.9%, 20세 - 49세 성인 6.8%로 성인보다 높음.
-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이 필요함.
- 기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 검토 및 분석(외부 소규모 용역)
 - 현황 파악 및 문제점 검토, 제시된 개선 방안 검토
 - 해외 사례 검토 개선 방안 초안 마련
- 초안에 대한 관계부처,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토론회 개최
- 관련 제도 개선 권고안 마련

□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 연구

- 정신적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될 성년후견제도가 내실 있게 시행되어야 함. 성년후견제도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성년후견을 담당할 후견인을 교육하고 제3자 후견인 양성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층도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후견과 후견감독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 작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 작성 및 의견수렴
-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 배포 등
 - ※ 필요시 정책 권고

□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및 캠페인 실시

- 장애분야 중 정신장애와 관련한 정책, 제도의 미비점과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위원회의 정신장애 국가보고서의 후속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정신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여전히 미약한 현실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한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편견해소를 위한 활동이 요구됨.

-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정신장애 분야 정책 및 법제에 대해 장애당사자, 관련 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정책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정신장애인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캠페인 실시
 - 장애 당사자가 주체가 되고 관련 단체 등과 협조하여 비장애인들의 인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행사 등을 실시함.

2. 성차별 시정 강화

□ 여성감정노동자 인권개선(계속)

- 콜센터, 대형마트, 백화점, 식당 등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여성 감정노동자들이 약 300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여성감정노동자들은 저임금, 고용 불안정 상황에서 사회적 인식도 저평가되고 있음.
- 2011년부터 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여성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여성감정노동자 인권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여성감정노동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옴.
-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여성감정노동자의 노동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제 개선안을 마련, 정책 개선 권고를 추진함.

-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정책협의 및 간담회 실시
 - 근로환경 개선, 고객의 성희롱 등에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여성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등 노동 인권 개선 방안
-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 향상 및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권고안 마련
 - 건강권, 성희롱 고객 등에 대한 대처방안 관련 법제 개선 추진

□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증진(계속)

- 2010. 가출청소년 신고 건수는 28,124명, 여성가족부 유해환경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가정 이탈 청소년이 연간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2011년 기준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현황은 총 83개소(정원 851명)에 불과하고, 여성가출청소년의 경우 생계, 주거 등을 이유로 성매매 등 범죄피해에 극히 취약한 상황임.
- 위원회는 2012년 쉼터 등 보호시설 밖의 가출 여성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권상황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인권상황 현장조사를 토대로 가출여성청소년 인권증진 방안 마련 및 정책 권고

□ 비정규직 여성 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개선

○ 2009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8.9(남성 100, 여성 61.1)로 OECD평균 15.8%의 2.5배에 달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특히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가장 열악한 임금수준에 놓여있음.

○ 비정규직 여성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선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 실태를 파악하여 경제적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011년 제4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남녀고용평등법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관련된 조항의 집행’을 권고한 바 있음

○ 비정규직 여성 임금격차 실태조사

- 기업규모별, 업종별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 대상
- 비정규직 남녀 임금 격차의 원인 분석

○ 비정규직 남녀 임금격차 해소 방안 마련

- 경제단체, 노동자 단체,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 임금차별을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 방안 마련

□ 고용상 여성 차별 기획조사

○ 여성들의 직업 영역이 다양해 지고 있으나,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음. 개별 진정사안으로 접근하기에 입증에 한계가 있고, 업종 또는 업계 단위의 차별 시정이 실효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업종 또는 업계 단위별 성차별 시정을 도모함.

○ 한편, 기업 등 사적 영역의 경우 임신·출산에 따른 퇴직 강요, 승진 및 성과급 등 차별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이는 바, 우선 여성의 비율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함.

○ 여성 (시내버스)운전기사 채용 차별 기획조사

- 서울시에 등록된 시내버스 운수회사(2012. 3. 현재 총 67개)의 운전기사 채용 현황(시기, 인원, 채용방식, 지원자격) 등에 관한 자료 조사
- 마을버스 및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는 여성 운전기사 대상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구직활동 및 채용 차별 경험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차별이 확인 될 경우 감독기관에 대한 정책권고 및 업계에 대한 시정권고

- 임신·출산으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 기획조사
 -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에 따른 고용상 불이익 기획조사

3. 연령·학력 등으로 인한 차별개선

□ 병력자에 대한 차별개선 및 인권향상

- 병력 사건은 일반인들의 잘못된 상식과 편견 및 선입견으로 인해 병력자들을 차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에 일반인들이 갖는 AIDS 및 B형 간염 등에 대한 편견을 바로 잡고 차별 의식 개선 활동을 통해 병력자들에 대한 차별 예방 강화가 필요함

- 대한의사협회 등 외부 전문가 간담회 통해 내용 구성
- AIDS 및 B형 간염 등 주요 병력별로 전문의 또는 관련 기관 소견, 위원회 진정사건 조사 결과 등 반영
- 일반인들의 병력 차별에 대한 편견 예방 안내서 제작·배포

4. 성희롱 예방활동 강화

□ 성희롱 예방 및 구제 관련 홍보

-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인 바 2013년도에는 기관 간 유사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합하여 안내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과 피해자 구제효과를 높이고자 함.

- 성희롱 예방 및 구제에 관한 브로슈어 제작·보급
 - 위원회의 성희롱 조사 및 구제 업무 외에도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타 정부기관의 성희롱 예방 및 구제업무를 모두 포함
 - 또한 법원의 소송절차, 성추행 등 사건에 대한 형사 절차도 포함한 종합적인 성희롱 예방 및 구제 안내 브로슈어를 제작·보급함으로써 성희롱 예방 및 구제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 제공

□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 개선

- 2012년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관련 기관 등에 대학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 권고하고 이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자 함.

- 2012년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권고
 - 정책권고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토론회 개최
- 권고 사항의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및 대학 관계자 협의회 개최

□ 수사 및 재판과정의 2차 성폭력 피해 방지

- 성폭력을 가해자-피해자 개개인의 권리 충돌의 문제로 인식하거나 성폭력 피해자도 원인을 제공한다는 인식 등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장이 충분하지 못함.
- 성폭력 2차 피해는 성폭력 피해 후 사법기관, 언론, 의료기관, 가족, 친구 등의 부정적 반응과 편견 등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사회관계적 피해를 입는 것인데 특히 수사·재판담당자들의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성 부족은 2차 피해를 직접적으로 가중시킴.

- 수사·재판과정의 성폭력 2차 피해 실태조사
 - 성폭력,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재판기록 분석, 피해자 심층면담 등을 통해 2차 피해 실태 조사
- 수사·재판 과정의 2차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현행 법제도 및 운영실태 조사
 - 관련 규정, 관련 규정의 인식 및 운영실태 등 조사
 - 외국의 관련 제도 및 운영실태 조사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개선안 마련
 - 실태조사 결과, 관계기관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개선안 마련

특별사업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 북한인권 관련한 긴급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정책권고, 의견표명 등 정책개발 활성화를 추진함.
-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확립함.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의견표명 등 추진
 - 탈북자 강제북송, 수해 등 북한인권과 관련된 긴급현안 대응 및 정책 개발
 - 북한인권 연구용역 및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한 권고 등
 -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 증진방안
 - 탈북청소년의 교육권 증진방안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와 현장에서의 실제 적용에 관한 정책 검토
 -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차별개선 방안
-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 선순환 구조 정착
 - 북한인권침해신고내용 보완조사 등을 위한 관련부처, 단체와 업무협약의 강화(하나원, 정부합동신문센터, 하나센터 등)
 - 북한인권침해신고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 북한인권침해내용 사례집 발간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한 인식 확산
 -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신고상담 내용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개발
- 북한인권 인식증진 자료 개발
 - 2003년 이래 매년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2012. 5.), 북한의 최고 지도부 교체에 따라 국제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
 -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북한인권침해 내용'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영문 번역하여 북한의 인권참상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
- 북한인권 개선 국가 정책 권고에 대한 정부 이행계획 모니터링
 - 관련부처와 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
 - 북한인권 영역별, 이슈별 전문가 간담회 추진 등
- 북한인권특별위원회¹⁾ 및 북한인권포럼 운영

1)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연장을 위해 전원위원회의 별도 의결(2012. 1. 9. 연장의결)

- 정책사안 검토, 이념적 대립에서 벗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북한인권에 대한 각계의 시각차를 줄이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정책개발 추진
- 다양한 분야 전문가 북한인권포럼 추가 등 재구성
- 북한인권 현황파악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
 - 탈북청소년 교육권 증진방안 실태조사, 북한 구금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

□ 북한인권 국제네트워크 기반조성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인권 상황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상호 공동관심 사항 협의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공조방안을 모색함. ○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전문가와 업무공조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여론 조성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국제협력 기반을 조성함. |
|--|
- 국제심포지엄 개최(2013년 상반기)
 - 주제(안)
 - 북한정치범수용소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국제연대 방안
 - 재일북송교포, 이산가족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 등
 - 참가대상 : 북한인권 전문가, 주요국가 대사관, 국제NGO 단체 등
 -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기구와 국제공조 협의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특별보고와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는 유엔인권이사회 등에 국가인권기구 의견발표를 통해 국제공조 추진
 - 2009년도 북한 인권에 관한 UPR이후 4년이 경과됨에 따라 북한인권 UPR시 의견 제안, 북한이 가입한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조약감시기구 등을 통한 공조 모색
 - 북한이탈주민 인권상황 파악을 위한 현지실태 파악(예산 확보시)
 - 제3국 체류 탈북자가 태국 등 동남아 이민국 보호소에서 장기간 대기, 보호소의 생활여건이 열악 등에 대한 실태 파악

기획사업 1.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

□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조성

- 기업인권과 관련된 법·제도 전반을 검토하여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
- 해외진출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법적·비사법적 구제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ILO 핵심노동기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유엔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에 나타난 다국적기업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법령 및 제도 개선 정책권고

□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국내 공감대 형성

- 기업의 인권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경영에 대한 학습효과를 제고함.
- 기업과 인권 포럼 구성의 확대
 - 중역급 이상의 포럼과 기업 실무자 위주의 포럼으로 이원화
- 기업과 인권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의 기업 적용과 확산
 -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의 의견 청취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초안 확정
 -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기업에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체크리스트 확정-주요 기업에 보급 및 확대
- 기업과 인권 현안에 관한 토론회

□ 국제협력활동 강화

-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국내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ICC 기업과 인권 아시아 지역 워킹그룹(Working Group) 국가로서의 국제협력을 강화함.
-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연례 포럼, ICC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 회의참가

- 위원회의 사업 및 성과 발표, 각국의 주요 사례 및 후속조치 등 공유
- 국제기준 등의 주요 자료를 번역하여 국내에 보급함
- 포럼 참여 기업,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기업 등
- 국제 기준 이행 후속조치, 모니터링, 기타 기업과 인권 국제 동향 파악

기획사업 | 2. 정보인권 증진

□ 정보프라이버시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기준 마련 등

- 제1차 UPR 권고 및 제1기와 제2기 NAP에서 권고한 실명제 개인정보 처리 관행 등의 개선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폐기 또는 재정비를 위한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고,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주년에 따른 법률적 미비점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함(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관련 법률 제도 개선).
-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활용 사이의 프라이버시권 원칙과 방향제시 필요
- 정보화 기기의 발달에 따른 새롭게 제기되는 개인정보 침해 관련 이슈에 대한 사회적 제도 개선 논의(DPI(심층패킷감시장비), 빅데이터 등).

-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 CCTV 관련 종합적 가이드라인 제시(노동감시, 통합관제센터 등)
- 정보인권 포럼 운영

□ 스마트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하는 기관이 증가하면서 노동강도의 증가, 위치추적 및 이메일 감시 등의 사생활 침해, 인사상 불이익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국민의 노동인권을 개선하고 정보인권 측면에서 개인정보 침해 등 스마트 워크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적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 대책마련이 필요함.

- 스마트 기기(CCTV에 의한 근로감시 포함)에 진정사건, 상담 사례 분석
- 유형별(위치정보, 화상정보, 생체정보 등)스마트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사례 조사
- 전국 단위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서의 노동인권 침해 관련 설문조사
- ※ 스마트기기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관련 상담사례

- 회사 내 스마트폰 및 GPS 위치추적을 통한 동선 파악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2010.8.25 , 2011.3.3 상담)
- 요양보호사의 핸드폰 위치추적 및 통화내역 조사 (2012.4.12 상담)
- 택시 내 바코드에 의한 위치추적 및 개인 신상정보 노출 (2012.5.8 상담)
- 사무실 내 CCTV설치를 통한 실시간 근로감시 (2012.3.16 상담)

□ 인권친화적 사이버 문화 형성을 위한 방안 마련

-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접속이 보편적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2012년 아셈 인권세미나 논의)되면서 EU를 중심으로 인터넷 망 중립성 논의가 본격화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차별 없는 인터넷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인터넷과 웹브라우저 발달에 따라 문화의 생산, 소비가 쌍방향으로 나타나고 개방, 공유의 정신이 가시화되어 실현됨에 따라 이를 이유로 강화되는 지적재산권의 흐름과 이를 제한하려는 인권으로서의 정보문화향유권의 충돌 문제가 본격화 되고 있음.

-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차별 없는 네트워크 접속 및 이용 보장
 -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인터넷 접근권과 정보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과 저작권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
- 저작권 삼진아웃제, 공정이용 확대 등 저작권 관련 규제 논의

□ 정보인권보고서 발행 및 이행 모니터링

- 정보인권보고서 발간에 따른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사회에 기준을 제시하고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함.
- 정보인권 관련 국제사회 및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관련 중요 안건을 지속적으로 개발함.

- 정보인권보고서 발간 홍보 및 토론회
- 정보인권보고서 요약 영문홍보자료 작성 및 발송

1. 국내외 협력 강화

□ ICC, APF 교류협력 강화 (다자간 협력)

- UN, ICC, APF 등 다자간 회의체를 통한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인권의제를 파악하고 선도함으로써 선도적인 인권위원회 그리고 인권선진국으로서의 국가위상을 강화함.
-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본연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ICC·APF의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인권보호체계와 국내인권보호체계의 가교 역할 활성화가 필요함.

○ ICC 리더십 역할 강화

- ICC 집행이사회, ICC 기업과인권실무그룹, ICC 고령자인권실무그룹 참가
- ICC승인소위원회 위원회 정기심사(8월)에 대한 적극적 대비

○ UN, ICC, APF 등 인권국제회의 참가

- UN 인권관련 회의 참석(인권이사회, 각 조약위원회 회의 등)
- ICC 연례회의 및 집행이사의 등 참석, 우리 위원회 모범사례 발표 등 적극적 역할 견지
-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연례회의·실무그룹 회의 등 참석

○ ICC 및 APF 활동지원

- 아태지역 인권보호 활동 지원을 위한 APF 활동 지원(100백만원)

□ 국제인권기구 협력 강화 (양자간 협력)

- 국제인권사회에서 모범적 국가인권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인권기구 및 외국 국가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내외 인권증진 기여하고,
- 아·태지역 개발도상국 국가인권기구에 인권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인권선진국으로서의 리더십과 국가위상 강화 함.

○ 국제인권기구 교류 협력

- 국제인권기구와의 교류(유럽인권재판소)
- 외국 국가인권기구 방문(캐나다인권위원회)
-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초청 연수
 -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직원 대상 초청 연수프로그램 운영
 - 위원회 설립이후 주요 활동 및 성과, 국제 인권현안을 고려한 주제를 선정, 참가인권기구간 경험 공유 및 우리 위원회의 노하우 전파

□ 국제인권정책개발과정(ODA 초청연수) 운영

- 국제인권사회에서 모범적 국가인권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인권기구 및 외국 국가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내외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 아·태지역 개발도상국 국가인권기구에 인권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인권선진국으로서의 리더십과 국가위상을 강화함.

- 과정 명칭
 - 국문 : 2013 인권정책발전과정
 - 영문 : 2013 Human Rights Policy Development Program
- 기간 : 2013. 3/4월 경
- 장소 : 코이카연수원(입교식과 수료식은 위원회)
- 후원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참가규모 : 6개국 20명
 -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수단, 나이지리아

□ ODA의 인권적 접근에 대한 국내적 논의 활성화

- 유엔개발계획(UND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이미 10수년 전부터 개발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바, 발전권, HRBAD(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Development)의 개념 등 국제적 논의를 연구, 소개, 홍보함으로써 국내적 논의를 활성화함.
- ODA를 포함한 발전권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향후 인권위의 업무 추진방향 및 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

- ODA 및 발전권 관련 유엔 및 국제기구 자료의 번역 및 자료집 발간
 - UN 발전권 선언, OECD의 인권과 개발에 관한 실행정책서 등 발전권과 ODA의 인권적 접근에 관한 유엔 및 국제기구의 자료 번역, 제작·배포
- ODA 및 발전권 관련 전문가 간담회
 - 한국의 ODA 관련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한 개괄적 검토, ODA 및 발전권 관련 위원회의 역할 및 정책방향 등 논의

□ 국제인권동향 모니터링

○ UN, APF, ICC, 국가인권기구, 국제 주요 NGO 등의 활동 및 동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국제 인권 현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의 적절하게 대응함.

- 주요 내용
 - UNOHCHR, UN 인권이사회, APF 및 ICC, 국제 NGO, 주요국 국가인권기구의 활동 및 주요인사 동정 등을 파악하고 주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배포
- 동향 파악 방법 : 관련 홈페이지 검색, 기관 뉴스레터 등을 통해 조사
 - ※ 국제인권동향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 인턴을 채용할 계획
- 주기 : 월 1회 배포
 - ※ 상황에 따라 주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신속대응이 필요할 경우 추가 배포
- 배포방법 : 인트라넷 공지사항에 게재하고 부내 메신저로 배포
 - ※ 위원장실, 사무총장실, 상임위원실 및 각 국장실에는 하드카피 배부

□ 인권정책관계자 협의회 활성화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전문가, 단체 등과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원활한 협의와 소통을 위해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활성화하고자 함.

- 정책권고 이행 또는 주요 인권관련 범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관계자 협의회 실시

□ 인권단체 보조금 지급

- 인권단체 등의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사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인권단체 활동 활성화 기여와 인권정책과제 발굴하고,
- 사회적 소수자 등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을 통하여 생활 속의 실천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인권단체와의 상호 협력을 증진함.

- 기본계획 수립·확정
- 지원사업 공모, 인권단체 협력사업 설명회 개최
- 2013년 협력사업 선정과 지원
 - 「보조금사업심사위원회」 사업 심사와 선정, 보조금 지급 및 사업 추진
 - 사업 중간평가(서면평가) 및 현지모니터링
 - 사업결과보고서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인권단체공동협력사업 사후 활용 방안 검토
- 우수사업 사례 발표회 개최
 - 인권실천 우수사례 선정을 통한 사업 성과 확산 모색

□ 시민사회와 인권증진 공동협력

- 인권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논의 활성화, 우리 위원회 인권정책 의제 개발 등에 참여 기회를 확대함.
- 인권현장 방문을 통하여 현장 활동가 등의 의견 수렴, 생활 속의 인권상황 점검과 인권정책 개선과제를 발굴함.

- 인권시민단체와 일상적 교류협력
 - 인권시민단체 활동 상시적 모니터링과 위원회 사업과의 연계방안 검토 추진
 - 위원회 전략과제 관련 인권단체 등과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연5회)
 - 위원회 활동 및 성과 등에 대한 의견수렴 워크숍 개최(연1회)
- 인권현장 방문 추진
 - 인권취약분야 인권상황 점검 및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아울러 생활밀착형 인권개선 과제 발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현장방문 실시(월 1~2회)
- 인권단체 인권증진 활동 지원

- 인권단체 등의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 위원회 후원 명칭 사용, 행사 참석 등 인권 활동 지원
- 인권단체 활동 지원(명칭/재정후원/배움터 사용 등)

□ 이주인권이슈 관련 지역협력 및 상시 모니터링 운영체계 구축·운영

- 이주인권 공감대 형성 및 이주인권 인식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 및 이주인권 관련 분야별 NGO 소통과 교류가 필요함.
 - 이주인권 실태 정보공유, 개선 등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 수렴 등
- 이주인권에 대한 정부 정책 및 국회 입법 상황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하여 문제점 파악 및 정책대안 검토가 필요함

- 이주인권 관련 정부 부처 및 국회 입법에 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대안 검토, 필요시 권고 및 의견표명
- 이주인권 현안 이슈에 대해 필요시 관계부처와 업무협약의 추진
- 지역별 이주인권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설명 및 보완 사항 논의
- 이주민 관련 NGO 및 이주 당사자와의 간담회 등 업무협약의 추진

□ 언론사 기자 간담회 및 인권단체 등과의 다각적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내 인권문화를 조성하고 인권사무소 개소 기념일을 맞아 언론사 기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활동성과 등 홍보)함.
- 2013년 활동방향에 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의 의견청취 및 지역사무소 운영에 관한 의견 청취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함.
- 세계인권선언 제65주년의 계기를 살려 지역에서의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인권문화행사를 개최함.

- 언론사 기자와의 간담회
 - 2013년 업무계획 설명, 인권사무소 개소 기념일을 기점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활동 성과 홍보
-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 지역의 원로 및 인권단체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위원회 중점사업 등에

대한 의견 청취하고 다각적 협력체계 구축

○ 세계인권선언 65주년기념 문화행사

- 2013년 위원회의 중점 방향에 맞게 실시하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
- 일회성 행사보다는 부산인권문화제추진위원회(40여개 단체)와 연계하여 인권주간행사(토론회, 전시전, 영화제 등)를 기획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인권의식 확산
-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주간 행사(부산인권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인권전시전, 인권토론회, 인권영화상영회 등의 사업 후원
- 인권문화한마당 “인권아, 놀자!” 개최

○ 주요언론의 인권보도 준칙 실태조사

- 주요 언론사(10개 중앙일간지, 3대 공중파 방송)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 조사
- 언론계 내부의 인권보도준칙에 대한 인식과 적용 관련 개선 과제 파악
- 인권보도준칙 홍보와 교육, 준수를 위한 실천 방안 검토

□ 지역 인권기관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유관기관 및 인권단체와의 파트너십 강화, 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인권개선을 위한 역량강화에 기여함.

- 인권기관단체 종사자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

2.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 조사관의 전문성 향상

○ 국가인권기구의 조사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 및 전문지식을 배양함.

- 국제법, 인권규범 관련 결정 및 판례, 조사기법 등 전문역량을 체계적·상시적 교육
- 내부 정기인권강좌 실시와 외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위탁교육 검토

- 인권 규범 및 법리에 관한 조사관 정기인권강좌 실시
- 운영 : 월 1회(넷째 화요일) 실시
- 과별 조사관 『사건 케이스 Study』 운영
- 조사 현장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관학교』 운영

□ 직무 역량 및 장애단체 교류협력 강화

- 고용, 교육, 재화·용역, 사법·행정·참정권, 괴롭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잡하게 발생하는 장애차별 진정사건의 처리와 법령·제도·관행에 대한 시의 적절한 문제점 발굴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단체협력 및 전문성이 요구됨
- 이에 진정사건 사례에 대한 스터디 정례화 등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고양하고, 시의 적절한 문제점 발굴과 개선방안을 모색을 위해 장애단체와의 정기적 간담회 개최

- 장애차별 진정사건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례 스터디
- 장애감수성 및 장애 특성 이해를 위한 장애 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방문
- 분기별로 장애단체와의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장애계 이슈, 장애관련 사업 및 정책현안 등에 대해 논의

□ 권리구제분야 등 직원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사무소 업무 매뉴얼 제작 보완

- 구성원 개인 및 상호간 업무 역량, 협력체계(파트너십)를 정착시키고, 구성원 개개인이 조사관 및 인권 교육 강사로서의 역량을 함양시킴.

-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결정례, 법령, 사례 등 공유 토론의 장 마련
- 1 직원 1개 분야 인권 강사 되기 역량함양 프로그램 운영
- 업무 매뉴얼 정착 직원교육 실시, 추후 개선사항 등을 포함 보완

[부록]

2012년 추진목표별 실적 및 평가

1.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강화

<실적>

- 자유권의 보장강화를 위해 UN고문방지위원회 제3,4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교실내 CCTV 설치의 인권침해 여부, 성폭력우범자 재범방지 예방자료 배포,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
- 사회적 파급효과와 인권개선 효과가 큰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하였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보장강화를 위해 안마사 자격 관련 의료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였고,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 권고, 방송영상산업 제작스태프의 노동인권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의 청년유니온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판결에 대한 논평을 냄.
- 제2기 UPR 관련 위원회 정보보고 의견제출 및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여 UN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업무를 수행함.
- 군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기획단 운영을 통해 군인권법 제정 등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제도개선권고를 하였고, 군 이명피해자에 대한 대책마련 권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군부대내 상습 폭행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함.
- 최근 사회적으로 제기된 성폭력 문제에 대하여 형법 등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안을 권고하였고,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하여 일본정부 및 한국정부에 성명을 발표함.
-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화 구축을 위하여 정책관계자협의회 및 전

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인권기본조례의 제·개정 권고.

- 정보인권 주제로 한 제12차 아셈인권세미나 개최, 제2기 UPR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유엔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

<평가>

-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정부의 과잉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였음.
- 국민의 주거권과 관련하여 노숙인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정책개선을 권고, 향후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등으로 확대해나갈 필요성 있음.
- 또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의 인권 개선이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인권과제의 발굴 및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국제인권업무 중 국제교류협력 부분은 비교적 활발하였으나, UPR 이행실태 및 국제조약기구 권고내용 이행실태 모니터링, 국제조약업무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은 미흡함.

2.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실적>

- 국내 최초로 연근해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와 「국내 체류 이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지원 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인권개선 대안을 마련함.
- 「인종차별철폐협약 국내 이행 강화사업」, 「이주인권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역사회 교류협력 강화」등을 수행, 다문화 사회의 현안을

국·내적으로 정보 공유하여 인권상황 개선에 기여함

- 노인인권지킴이단을 통하여 연령차별 사안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후 진정이 제기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연령차별 문제를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함.
- 노인인권개선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정책기획단을 통하여 다양한 노인인권 정책과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
- 위원회 처음으로 소년원(제주), 소년분류심사원(서울)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로 소년대상의 보호처분 시설내 인권개선대책 마련 제시하였으며,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표명함.

<평가>

-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과 고도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앞서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점들을 의제화 해야 함.
- 노인인권지킴이단이 노인인권옹호를 위한 자생적 모임으로 성장하는 것은 여전히 한계가 있어 그 원인에 대한 검토 필요함.
- 아동복지시설(아동 그룹홈), 소년보호시설 등 상대적으로 사회로부터 단절된 보호시설내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함.
- 2013. 7월에 난민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난민 신청 및 인정절차의 투명성·공정성,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사회적 처우 문제 등 이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3.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

<실적>

- 언론, 보도 등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통해 알게 된 사건·사고에 관하여 신속히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국무총리실의 민간인사찰 직권조사,

수원여성살해사건 직권조사, 경찰의 과도한 수갑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경찰의 부당한 물대포 사용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

- 호송경찰관출장소 방문조사를 통해 신축·개축 또는 시설개선에 따른 설계 표준 규칙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광역유치장 관리 및 운용 제고를 위한 부서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광역유치장 장애인 편의시설, 유치실내 화장실과 변호인접견 관련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함.
- 제주강정마을 시위와 관련하여 2차례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현안에 대한 현장 해결, 직권조사 개시검토 등 효율적 구제활동을 전개함.
- 교환기 교체 등으로 전화통화 음질이 대폭 개선되고, CTI시스템 통계 기능을 활용하여 전화상담에 대한 업무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음.
- 상담사례에 대한 정례적 토론과 학습으로 상담업무 처리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 향상, 상담 만족도 제고, 인권순회상담을 활성화함.

<평가>

-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인권지킴이 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인권보호 방안 모색 필요함.
-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외 형사절차 등 인권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필요함.
- 통계에 대한 조사관들의 관심 부족으로 데이터 누락, 지연, 잘못 지정 등으로 통계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
- 인권위법 개정으로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조사영역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사건처리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기획조사 발굴을 위한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아동 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이슈 등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함.

- 감정노동이 가장 심한 상담원 보호를 위해 감정컨트롤 능력배양 및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실적>

- 인권교육의 전략적 운영을 위해 「인권교육법」 제정 추진, 개별 법령·조례 등에 인권교육 의무화 조항 삽입을 위한 노력으로 인권교육 제도화 기반을 조성함.
- 인권교육 장기계획 수립(2013~2022)을 통한 인권교육 지향성을 명확히 하였으며,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권고(2012.7.)함.
- 인권교육전문위원회, 학교인권교육협의회, 군인권교육협의회 등의 운영 및 노숙인인권교육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 사이버인권교육 강화를 통한 상시학습체제 구축하여 교육대상 저변을 확대하였고,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등 학교인권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
- 국제인권교육 메카니즘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인권교육의 국내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 행동계획 중간점검에 대해 UN에 의견표명, 국내이행을 점검함.
- 분야별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한 인권교육 표준화를 위하여 인권교육 자료에 대한 원고료지급기준 및 인권교육콘텐츠 개발 매뉴얼 수립 등 콘텐츠 개발체계 구축, 노숙인·다문화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노인 분야 인권교육 표준강의안 개발, 차별 및 군대 분야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2종) 개발.

<평가>

- 18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인권교육법」을 19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교육과정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연중 실시될 수 있도록 분산 운영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의 지도층 등 인권교육 대상자를 확대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함.
- 법령의 제개정, 인권현안 변화, 새로운 결정례의 등장 등에 따른 교육 교재에 반영 등 교육콘텐츠의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함.
- 모바일 등 새로운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전환 및 보강 필요함.

5. 차별 시정 강화

<실적>

- 지속적인 장애차별사건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하여 해당부처가 관련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개별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이를 제도적으로 연계하여 변화를 이끌어 냄.
-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구제를 활성화하고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획조사를 통해 은행, 학교, 도서관, 공원, 복지시설 등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경사로 설치를 권고하였고, 장애인 접근성을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운영함.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인권정책을 위해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2013~2017), 장애인 보험차별 가이드라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을 위한 인적서비스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함.
- 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통해 주거, 건강, 고용, 교육, 소득 등의 종합적 정책대안 제시함.

- 성평등 정책의 추진 강화를 위한 여성발전기본법 전면 개정, 가칭 성차별금지법 등 제정 촉구,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모니터링 강화 및 출산휴가 관련 교원성과상여급 지급에 관한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여군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가출여성청소년 인권현황 조사를 통해 사회적 관심과 인권증진의 토대를 마련함.
- 차등정년, 채용과정에서 차별예방 등 고용차별시정을 위해 정부부처를 선도하였고, 여성 감정노동자 의식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인권수첩을 제작·배포하고, 지역캠페인을 진행함.
-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 제외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고 고용 현장의 나이차별 개선을 위한 토대구축 일환으로,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기념 토론회 및 정년차등 실태조사 결과발표회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청사 관리용역 고용차별 실태조사>를 진행함.
- 성희롱 조사 및 구제업무의 효율화 등을 위한 <성희롱 사건 백서> 발간, 원양어선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성희롱 및 임금차별 개선 권고 등을 통해 우리 위원회가 성희롱·성차별 조사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였고, 대학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파악 일환으로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진행하고, 2011년 실시한 대학 성희롱·성폭력 관련 전문가 간담회와 연계함.
- 종립학교에서의 종교차별 예방을 위한 <종교에 의한 차별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실태조사를 추진함.

<평가>

- 장애단체, 정부유관부처,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 필요함.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인권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에 대한

인권강사 양성이 필요함.

- 지속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유의미한 성과 발굴을 위한 차별시정 종합계획 마련이 필요함.
- 실태조사 후 이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실태조사 추진 시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 등과 원활한 진행을 위한 논의의 장 활성화 필요함.

6.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특별사업>

<실적>

- 인권의 보편적 관점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침해사례집(국영문)을 발간·배포(5월)하였으며, 미국(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지), 일본(아사이신문), 유럽(AFP통신) 등 국제언론의 주의를 환기하고 저명한 언론사들로부터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등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데 노력함.
- 중국에 억류중인 북한인권운동가에 대한 구금, 고문 등 인권침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자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함.
-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연장, 포럼운영 및 국제 토론회 참가를 통해 북한인권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북한인권관련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함.

<평가>

-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각 부서의 업무 협조를 통해 북한 인권 개선 활동 강화 필요.
- 북한 인권 상황 변화에 따른 여론 수렴 및 국제 공조 강화 필요.

7-1.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 <기획사업>

<실적>

-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유엔기구인 글로벌컴팩트와 공동으로 기업과 인권 포럼을 두 차례 개최, 유엔 프레임워크와 노동권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함.
- 기업과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에 대한 개선 연구를 통해 법령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권고 자료를 마련함.
-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핵심쟁점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데 기여함.

<평가>

- 2012년 개발된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향후 민간기업에 시험 적용하고, 이를 전사회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작업이 필요함.

7-2. 정보인권 증진 <기획사업>

<실적>

- 정보인권 주제로 한 제12차 아셈인권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
-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보기술의 발달과 수사기법의 발달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함.
-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정보인권 특별전문위원회를 종료하고 정보인권 현안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정보인권 포럼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전문적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함.
- 정보인권 특별전문위원회, 정보인권 포럼 운영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정보인권 보고서 사업을 마무리함.

<평가>

- 정보인권 관련 기구 및 국제 NGO와의 국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함.
- 아셈인권세미나를 통해 정보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정보인권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함.